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1)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법제도 및 대응책을 모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의 인권과 평안을
또 다른 가족구성원이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절실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본 상담소는 가정폭력 재발방지 및 근절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및 폭력성행 교정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따로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현장에서 만난 가정폭력피해여성들은
자녀 등 여러가지 문제로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왔지만,
배우자의 폭력 중단을 최우선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만난 피해자들은 법제도에 의한
공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름의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등
대응방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대응방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법제도를 모색하고자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귀한 의견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 배 희

목 차

| 상담프로그램 소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 ·····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사례발표 | ····· 19

| 주제발표 |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 ····· 25

장 희 숙 · 황 순 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 65

정 현 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발표 |

정 윤 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 97

유 향 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105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이 민 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113

김 현 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 1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I.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 개관

1. 구성

(1) 가정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광범위하여 신체적 손상은 물론 심리적인 측면과 정신건강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행위자의 성행교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은 폭력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스스로 보다 안전한 삶을 되찾아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3)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폭력의 인식 정도,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4) 전체 상담프로그램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상담[1], 집단상담[2],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 라오니 모임(자조모임)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일일캠프 등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5) 또한 상담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및 일일캠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1) 가정폭력피해자의 음주문제 상담은 ① 배우자가 음주문제 소인이 있는 경우, ② 피해자 본인에게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피해자 대상 집단상담은 피해자의 욕구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고 부부 집단상담으로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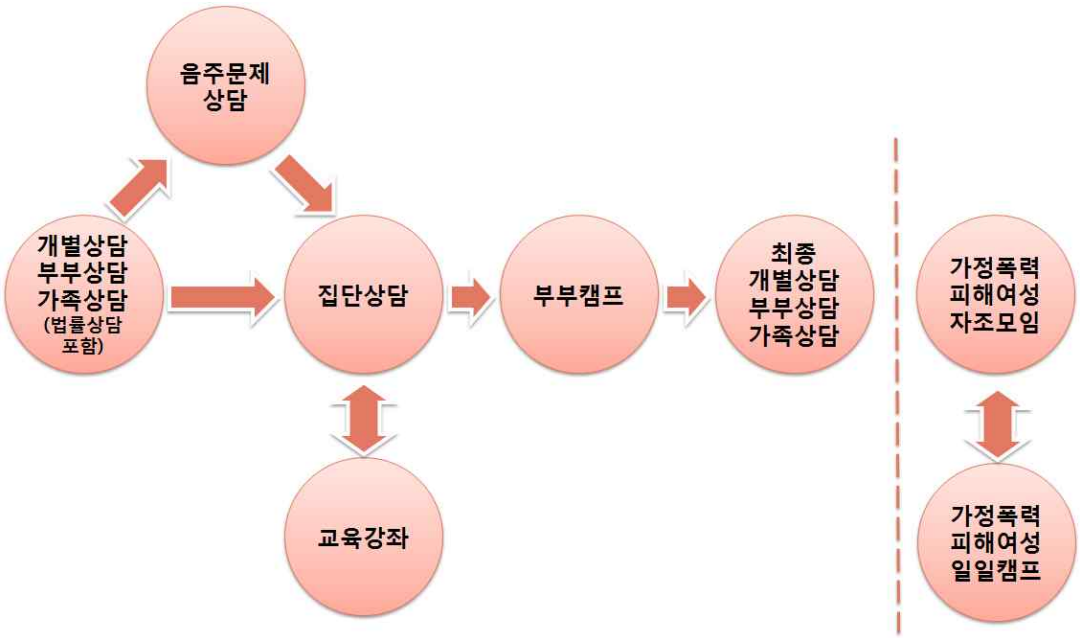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 각 단계별 과정 〉

	개별상담 3,294건	부부상담 833건	가족상담 729건
음주문제 집단상담	• 44회, 총 88시간, 총 119명 참석		
피해자 집단상담	• 12차, 78회기, 총 234시간, 총 78명 참석		
부부 집단상담	• 28차, 206회기, 총 618시간, 총 243명 참석		
교육강좌 (둥지교실)	• 191회, 총 627명 참석		
부부캠프	• 47회, 658쌍의 부부와 499명의 자녀 참석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라오니 모임)	• 146회, 총 897명 참석		
심신회복캠프 (라오니 캠프)	• 4회, 72명 참석		

〈 1998년 ~ 2019년 6월 현재까지 각 단계별 참석 현황[3] 〉

[3] 1998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 각 단계별 과정에 총 4,280명의 피해자가 참석하였다.

□ 프로그램 개요

단 계	구 분	목 표
가정폭력피해자 욕구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		
1 단계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정보수집 ·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상담(혼인 및 이혼 관련법,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 ·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모색 · 상담에 대한 want 확인 · 가정폭력피해자의 성장배경과 이에 따른 어려움 사정 · 폭력발생 원인 및 부부/가족갈등 원인 사정, 이에 따른 심리적 지원 ·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강화 및 지지체계 구축
2 단계	음주문제 집단상담	·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알코올의 이해(역사, 특징 등) · 알코올과 나(공격성, 분노, 치매 등) · 알코올과 가족(공동의존, 성인아이 등) · 알코올과 회복(재활의 실제, 관련 정보 등)
3 단계	집단상담	·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 공유 ·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인식 ·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해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모색 · 집단피드백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이해 및 타인에 대한 이해 향상 · 집단성원들간에 이해와 지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개인의 역량 강화
4 단계	교육강좌	· 피해자의 감정을 점검(See), 해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모색
5 단계	부부캠프	· 부부관계 재정립 및 새로운 전환점 모색 · 부부 및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힐링 캠프
6 단계	최종 개별상담	· 가정폭력피해자의 폭력인식 재검토 ·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계획 수립 · 부부/가족관계 재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7 단계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 ·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모색 ·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
사후연계 프로그램	심신회복캠프	·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 · 가정폭력 피해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모색 · 힐링의 시간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감정 표현
필요시	정신과 치료연계	· 정신과 전문의를 연계하여 피해자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소송구조	·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구조 필요시 지원

Ⅱ.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 내용

1.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1) 목적

1) 가정폭력 피해자의 현재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한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성장배경과 이에 따른 어려움을 사정한다.
3)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사정한다.
4)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한다.

(2) 진행

1)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은 피해자의 특성과 생업을 고려하여 연중, 매회 1시간, 1~5회 진행되고 있다. 1998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1,58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3,294회 개별상담, 총 833회 부부상담, 총 729회 가족상담을 실시하였다.
2)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의 구성 내용

회차	구 분	내 용
1회기	사전면접	·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정보수집 · 상담진행과정 및 가정폭력처벌법 설명 · 상담목표 설정
2회기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 감정상태 및 그동안의 생활 점검 · 원가족관계 파악 · 상담에 대한 기대 탐색
3회기		· 감정상태 및 그동안의 생활 점검 · MBTI 및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실시
4회기		· 감정상태 및 그동안의 생활 점검 · 부부갈등(가족갈등)의 주요원인 탐색 · 구체적인 행동개선 계획 수립
5회기		· 감정상태 및 그동안의 생활 점검 · 구체적인 갈등해결 방안 모색 · 폭력중단 및 재발방지 강조 및 대안행동의 습득

2. 음주문제 상담

(1) 목적

1) 음주문제의 잠재성에 대한 인식 및 감정의 표현을 촉진시킨다.
2) 음주의 개인적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3) 음주에 선행하는 가족적·사회적·직업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4) 음주의 선행 상황에서의 감정과 반응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5) 음주행동의 대안들을 증가시킨다.
6) 가해자의 음주문제 회복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진행

1) 음주문제 상담은 연 4회, 각 4회기로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대상 음주문제 집단상담을 2016년에 개설하여 2019년 6월 현재까지 음주문제의 소인이 있는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가 부부 및 가족갈등의 원인이 되는 피해자 총 119명을 대상으로 총 44회에 걸쳐 음주문제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2) 음주문제 상담의 구성 내용

회차	내 용
1회기	· 알코올 중독 선별 검사 · 알코올의 이해(역사, 특징 등)
2회기	· 그동안의 생활 점검 · 알코올과 나(공격성, 분노, 치매 등)
3회기	· 그동안의 생활 점검 · 알코올과 가족(공동의존, 성인아이 등)
4회기	· 그동안의 생활 점검 · 알코올과 회복(재활의 실제, 관련 정보 제공 등)

3. 집단상담

(1) 목적

1) 자기 개방을 통해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한다.
2) 집단 피드백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이해 및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3) 집단치료과정을 통해 성원들의 심리적 상처와 문제를 인식시키고 가정폭력 및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탐색하게 한다.
4)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해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5) 집단성원들 간에 이해와 지지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2) 진행

1)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총 12차, 총 78회기에 걸쳐 총 7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2008년부터는 부부 집단상담으로 확장하여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28차, 총 206회기에 걸쳐 총 24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부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2) 부부 집단상담의 구성 내용

회차	내 용
1회기	· 협력관계 형성 : 집단 참여동기 부여
2회기	· 감정의 정화 : 폭력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문제로 이해
3회기	· 실타래 풀기 : 원가족의 영향 파악
4회기	· 실타래 풀기 : 폭력과 관련된 이슈를 재해석
5회기	· 전략과 대안 모색 : 분노관리
6회기	· 전략과 대안 모색 : 의사소통 방식
7회기	· 전략과 대안 모색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8회기	· 변화와 성장 확인

4. 교육강좌 : 감성학교

(1) 목적

1) 나와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잘 점검한다.
2) 나와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잘 해결할 수 있다.
3) 나와 타인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잘 점검하고 해결하여 이를 유지할 수 있다.

(2) 진행

1) '감성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강좌는 개별상담이나 집단상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월 1회 진행되는 교육강좌이다. 2002년 7월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매월 1회씩, 총 191회 실시되었다. 강좌 개설 초기에는 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중심으로 강좌를 운영하였으나, 점차 행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강좌를 확대하였다. 2002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125회에 걸쳐 총 627명의 피해자가 교육강좌에 참석하였다.
2) 감성학교의 구성 내용

회차	일시	내 용
1회	2/14	· 분노 :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뜻대로 살고 싶은 내가 있다
2회	3/14	· 친밀감 : 또 다른 나를 만날 때 생기는 기쁨을 찾고 싶다
3회	4/11	· 불안 : 평안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매일 만나는 내 속 경보기가 있다
4회	5/9	· 홀가분 : 일상의 무거운 짐 아래 크게 숨쉬고 싶은 목소리가 들린다
5회	6/13	·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6회	7/12	·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7회	10/10	·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8회	11/14	·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만한 삶
9회	11/8	· 소속감 : 연결의 기쁨

5. 부부캠프

(1) 목적

1) 부부캠프는 부부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집이 아닌 새로운 공간 속에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쉬며 회복을 위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소에서는 부부갈등에 내재된 원인 및 자신을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돌아보며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져 부부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부캠프를 지속적으로 기획 실시해오고 있다.

(2) 진행

1) 부부캠프는 1박2일 숙박 프로그램으로, 부부 집단상담이 종료된 이후 또는 일련의 상담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연 2-4회 실시되고 있는 부부캠프는 2002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47회 실시되었으며, 658쌍의 부부와 499명의 자녀 등 총 1,815명이 참석하였다.
2) 부부캠프의 구성 내용

<table>
<tr><th colspan="2">토요일</th><th colspan="2">일요일</th></tr>
<tr><td>16:00</td><td>집결</td><td rowspan="2">8:00
~
9:00</td><td rowspan="2">기상 및 아침식사</td></tr>
<tr><td>16:00~
17:00</td><td>등록/휴식</td></tr>
<tr><td rowspan="2">17:00
~
17:50</td><td rowspan="2">저녁식사</td><td rowspan="2">9:00
~
12:30</td><td>부부치료 특강</td></tr>
<tr><td>자녀 프로그램(미술심리치료)</td></tr>
<tr><td>17:55</td><td>개회식</td><td rowspan="2">12:30
~
12:40</td><td rowspan="2">평가회, 폐회</td></tr>
<tr><td rowspan="2">18:00
~
22:00</td><td>부부치료 특강</td></tr>
<tr><td>자녀 프로그램(미술심리치료)</td><td rowspan="2">12:40
~
13:30</td><td rowspan="2">점심식사 후 해산</td></tr>
<tr><td>22:00</td><td>정리 및 취침</td></tr>
</table>

6.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1) 목적

1) 가정폭력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검토한다.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계획을 세운다.
3)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2) 진행

1) 최종 개별 심리상담은 피해자의 특성과 생업을 고려하여 일련의 상담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 1회, 1시간 진행되고 있다. 1998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1,586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을 실시하였다.
2)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의 구성 내용

구 분	내 용
최종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 상담을 통해 변화된 점 나누기 · 상담소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방할 수 있음을 안내 · 변화유지를 위한 점검

7.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

(1) 목적

1)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2)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모색한다.
3)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2) 진행

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경우, 상담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경험을 공유한 피해자와의 자조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본 상담소는 2004년에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모임'을 신설하였다. '라오니모임'은 '즐거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순한국말로,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 평등한 부부로 거듭나고자 본 모임이 지향하는 바를 내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월 1회 실시되던 모임을 월 2회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146회에 걸쳐 총 897명의 피해자가 자조모임에 참석하였다.
2) 가정폭력피해여성 자조모임의 구성 내용

회차	일시	내 용
1회 ~ 18회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 현재 자신의 삶 나누기 - 그동안의 생활 점검 -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모색 -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상호 경험 나누기 - 타인에게 피드백 주기

8. 심신회복캠프

(1) 목적

1)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2)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3)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모색한다.
4) 문화체험을 통해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한다.

(2) 진행

1) 심신회복캠프는 1박2일 숙박 또는 1일 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며, 일련의 상담과정에 종료된 이후에 사후연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폭력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히 문화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2015년부터 연 1회 진행하고 있는 심신회복캠프는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72명의 피해자가 참석하였다.
2) 심신회복캠프의 구성 내용

회차	내 용
1회	〈오전〉 · 피해자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 〈오후〉 · 문화체험 및 여행 등을 통한 정서함양과 심리적인 휴식

행 복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25살 되던 때, 제가 살던 동네로 남편이 일하러 오면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나 남편이 서울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고, 저도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였고, 소중한 두 아이도 얻었습니다.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술집을 전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남편은 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저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수차례 신고하여 파출소와 경찰서도 여러 번 가게 되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결혼생활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린다거나 피부에 하얀 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2013년 경, 경찰에 가정폭력신고를 한 사건으로 가정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남편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에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부부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었기에 제가 이혼을 원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우리 아이들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재혼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한 아내와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제게 '엄마가 우리와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는 죄가 있어도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 남편도 그동안의 경험으로 느끼는 바가 많아 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재결합을 하고 혼인신

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후에도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친구들과 매일 술을 마셨으며 집에 오면 물건을 파손하고 저를 폭행했습니다.

2017년에 남편의 음주와 외도문제로 다투다가 가정폭력으로 상담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프로그램에 참석하였고 특히 아내 자조모임에는 지금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제 마음에 쌓인 이야기를 하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자니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과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앞에서 제가 힘들게 살아왔던 과정, 마음 속 깊이 담아 둔 이야기를 하니 답답했던 마음이 풀렸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폭력으로 인한 서로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젊은 아내들의 사연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상담을 받고 이제는 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한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애틋한 정이나 사랑의 마음보다는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리고 과거에 남편의 불성실과 폭력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지금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달에 두 번 상담소의 자조모임에 참석하고, 주민센터의 문화교실에도 참여하면서 즐겁고 활력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나름의 삶의 이유를 찾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덕분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제게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언제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물론 각자 부부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당사자들에게 달려있겠지만 이렇게 상담을 받는 과정들이 도움이 되고 튼실한 가정과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로 발전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폭력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

편들은 아내에게 폭력을 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폭력을 당하게 된다면 그저 참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는 엄하게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금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례발표 ❷ |

A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후 어머니는 매일 장사를 하며 육남매를 키우셨습니다. 3남 3녀 중 넷째인 저는 대도시로 일하러 가거나 시집간 언니들을 따라갔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더부살이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1남1녀를 두었지만, 결혼한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두 아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뛰어다니며 성실히 일했고, 밝고, 무엇보다 자상했습니다. 저도 힘들었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재혼을 결심했고, 월세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척이나 자상하고 좋은 남편과 재혼하고 6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힘든 노동일을 하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말을 거침없이 내뱉고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조리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그럴까 이해하며 10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재혼 후 6년이 지나면서 막말은 도를 지나 급기야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은 망치로 살림을 때려 부수고, 말리는 저를 때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이어지는 남편의 폭력은 점차 심해졌고,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면 따라와서 끌고 들어오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 이웃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 산다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친정어머니나, 언니 오빠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시가 식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자해를 한 적도 있었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여름 어느 날, 집밖 편의점에서 남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서 상담소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변화할거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기에 저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은 점차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싫어하는 행동들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이 집에서 런닝셔츠를 입고 지내기, 냉장고 검사하면서 비난하지 않기, 욕설과 폭언 등 막말을 하지 않기 등을 원했는데, 실제로 남편은 결혼해서 처음으로 런닝셔츠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도 부드러워졌을 뿐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 언행을 사과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에게 늘 등을 보이고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 머리도 만져주고 애정표현도 해줍니다. 달라진 제 모습에 남편도 편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잘 살아보자는 등 좋은 말도 해줍니다.

상담소에서 개별상담, 부부상담, 부부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결혼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남편과 함께 가정이라는 좋은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지 말고 꼭 신고하여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없는 세상이 되는 첫 걸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

장 희 숙 · 황 순 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론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이 만들어 내는 내외적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및 행동전략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부부폭력 피해자의 대응은 크게 접근-회피 방식(Moos, 1995)으로 분류된다.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거리를 두는지 여부에 따라 접근 또는 회피적 대응으로 구별된다. 또 대처전략의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인지와 행동 대처(De Ridder, 1997), 문제중심과 정서중심 대처(Lazarus & Folkman, 1984)가 있다. 문제중심 대처는 문제가 되는 상황 자체를 제거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문제해결, 정보 수집, 대안 검토 등의 노력을 포함한다.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감정반응을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스트레스 종류와 상관없이 개인이 선호하는 대처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대처전략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Cohen, 1987).

대처방식은 피해여성들의 재폭력 피해나 정신건강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부부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관련자들은 여성들의 대처방식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 Lerner와 Kennedy(2000)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이 피해여성의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확률을 높인다고 말한다. 부부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폭력피해 양상을 조사한 연구(Bybee & Sullivan, 2002)에 의하면, 피해자 개입프로그램을 받은 여성들이 공식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추가적인 폭력의 피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Goodkind et al., 2004)에서도 부부폭력 피해자 서비스프로그램이나 보호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여성의 안전을 꾀하는 대응전략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Iverson 등(2013)은 접근 형태의 대처방식이 신체적 폭력의 재피해를 줄이는 예측요인임을 발견하였다.

한편 정서중심 또는 회피방식의 대처는 우울(Flicker et al., 2012)이나 PTSD(Krause et al., 2008; Lilly & Graham-Bermann, 2010)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불안과 절망감 수준을 높이고(Taft et al., 2007), 자존감(Lewis et al., 2006)을 낮추고 있었다. 현실부정, 약물복용, 자기비난 등의 역기능적인 대처전략은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lements et al., 2004). 반면 문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상대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높고 낙관적인 태도(Carver et al., 1989)를 갖고 있으며, 절망감 수치가 낮은 것(Fowler & Hill, 2004)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가까운 이들의 충고가 적극적 대처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조절변수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Kocot & Goodman, 2003)도 있기는 하다.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거나 조언자의 뒤섞인 또는 관계유지를 강요하는 메시지를 듣는 경우, 문제중심 대처가 오히려 정신건강 상태를 저하시키고 있었다.

한때 피해여성들의 회피적 대응에 대해 학습된 무기력 이론(Walker, 1984)을 적용하여 설명했다. 이 이론은 여성의 회피적 대응을 거듭되는 폭력으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수동적이 된 피해자의 행동양식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생존자 이론(Gondolf & Fisher, 1988)이 등장하면서 피해자의 행동양식은 그들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으며, 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평가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즉 비효과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대처라도 여성이 직면한 상황에서 당장의 폭력을 피하거나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한 강구책으로 이해한다. 이들이 처한 극한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는 여성들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정신건강문제 탓으로 돌리기 쉽다. 예로써, 지역사회의 일반인 샘플과 비교하면서 피해자들의 대응에 문제해결기술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폭력적인 관계에서 생성되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

다(Waldrop & Resick, 2004).

이러한 논지에 힘입어 문헌에서는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의 대처전략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폭력에 대한 피해여성의 대응은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산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대처행동을 분석할 때 개인의 특성에 관련된 요인 뿐 아니라 상황적인 변인을 포함하는 다면적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자원과 사회지지의 결핍을 강조하는 장애물 모델(Grigsby & Hartman, 1997)을 피해자의 대처전략에 적용해 보는 것도 유용하다. 여성들이 회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PTSD와 같은 심리내적인 문제이기 보다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수동적 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전에 사용한 대처전략의 결과에 따라 현재의 대처방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장희숙 등의 연구(2001)에 의하면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들 중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Michell과 Hodson(1986)은 사회기관의 도움이 컸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인지 및 행동 대처방식을 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어떤 개인 및 상황적 특성이 부부폭력 피해여성들의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도움을 준 대처전략을 탐색하고, 여성들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변화를 만드는 내용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폭력에 대처하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습득한 피해자의 경험적 지식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4)]

1. 피해여성의 대처방식

여성들은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한다

4) 참고문헌에 제시한 본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일부 발췌함

(Brabeck & Guzman, 2008). 빈번한 대응으로는 폭력의 고통과 모멸감으로 비롯된 울음, 고함 등을 들 수 있다(Kantor & Straus, 1990).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다른 곳으로 피신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1366, 경찰, 검찰, 법원, 쉼터, 상담기관 등의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폭력관계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벗어나는 것도 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피해자들의 경험적 지식은 객관적 지식만큼 중요하다. 폭력피해여성들이 권하는 대처전략에는 남편에게서 떠나는 것, 폭력발생 초기에 즉시 도움을 청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 경찰에 연락하는 것, 쉼터나 상담기관을 찾는 것 등이다(Bowker, 1983).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은 개인적 대응이나 가족, 친구 등의 비공식적인 도움보다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사용한 대처전략이 남편의 폭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다행히 상당수 여성들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대처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beck & Guzman, 2008). 문헌에서 밝힌 긍정적 전략은 종교/영성적 접근, 쉼터거주, 대인관계 유지(Brabeck & Guzman, 2008), 자기보호, 독립 준비, 감정표현, 문제해결(Bauman et al., 2008), 안전계획(Anderson et al., 2014), 사회적지지(Goodman et al., 2003) 등이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응방식도 있다. 일례로 남편을 달래거나 남편에게 저항하는 것, 집에만 머무는 것(Goodman et al., 2003) 등이다. 남편의 폭력에 맞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대응방식도 있지만 이는 여성의 상해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전국범죄피해설문(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1992-2005) 데이터를 분석한 Yun과 Lee의 연구(2014)는 자기보호를 위한 여성의 도구사용이나 격렬한 신체·언어적 저항이 그렇지 않은 상대집단보다 상해의 위험성을 2-4배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대처방식과 관계중단·지속 결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Lerner & Kennedy, 2000)도 있는데, 문제중심 대처를 자주 사용하고 정서중심 대처를 적게 사용하는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를 종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처전략의 선택은 여러 단계를 거친다. 어느 시점에서의 판단이 고정적이기 보다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피해여성들의 도움찾기, 행동변화, 머물거나 떠나는 결정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단계나 과정을 살펴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을 적용한 Burke 등의 연구(2004)에 따르면, 여성들은 전숙고, 숙고, 준비, 행동, 유지단계를 역동적 양상으로 건너뛰면서 인지 및 행동 변화를 거쳐 폭력관계를 종식하고 있었다. 행동변화에 초점을 둔 박언주의 연구(2010)에서도 피해여성들은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으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행동전략을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처방식의 영향요인

대처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여성들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Gondolf와 Fisher(1988)는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폭력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폭력의 빈도와 적극적 대응 간의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한국 피해여성들도 폭력의 빈도가 잦을수록 경찰의 개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희숙 외, 2001), 이런 현상은 Strube(1988)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가정의 피해자들이 경찰, 보호시설 등의 공식기관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폭력의 정도와 관련된 검증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인다. Mitchell과 Hodson(1986)은 폭력의 심각성과 회피적 대응의 연관성을 보고하면서, 이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여성의 사회지지체계를 약화시켜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심각한 폭력과 대응방식의 관계는 어린 시절 폭력에 노출된 경험 여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심각한 수준의 폭력에 대해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은 회피전략을 사용하며 그런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폭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관계를 중단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들(Jacobson et al., 1996; Rusbult & Martz, 1995)은 오히려 접근방식의 대처를 지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 Waldrop과 Resick(2004)는 폭력의 정도는 관계를 중단하거나 형사사법체계를 활용하는 사례들 경우에만 적극적 대응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 역시 여성들의 대처전략 선택에 주요하게 작용한다. 직업과 수입이 있는 피해여성들은 사회접촉이 많고 폭넓은 사회지지체계를 형성하면서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외부의 다양한 도움을 받는다(Mitchell & Hodson,

1986). 경제적 자립은 또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전략들을 확장시키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 여러 연구들(Bybee & Sulivan, 2002; Goodman et al., 2005)은 경제적 자원이 여성의 재폭력 피해를 낮추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개인 및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전략들을 활용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는 폭력에 대처하는 수단이자 다른 형태의 대응을 지원하는 자원이기도 하다(Waldrop & Resick, 2004). 비록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토대는 불충분하지만 사회지지와 접근적 대처의 관련성은 부부폭력 문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는 폭력에 대한 합리화, 최소화 등의 방어기제 사용을 줄이고(Mills, 1985), 폭력적인 상황에 갇혀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게 해주며(Dutton et al., 1994), 보다 적극적인 행동 및 인지 대응을 하게 만든다(Mitchell & Hodson, 1983). Candy와 Babcock(2009)은 사회적 지지가 폭력과 대응방식 간의 조절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총 409명 도움찾기를 한 여성들을 1년간 추적한 Goodman 등의 연구(2005)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폭력피해 재발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분석 결과 극심한 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미비해지고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질적 내용분석

본 연구는 특정 이론이나 철학적 배경 없이 연구현상에 다가가 연구자가 해당현상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구성한 질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의미를 찾는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했다. 질적 내용분석 가운데서도 전통적 내용분석(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을 적용하여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적 지식을 탐구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의사소통 연구에 활용되어 온 양적연구의 내용분석을 질적 연구방

법에 적용한 것이다. 양적 내용분석이 텍스트를 양적단위로 세분화하는 미시적인 분석에 집중하는 데 비해 질적 내용분석은 전체 텍스트의 맥락과 각각의 의미단위를 연결시키는 총괄적인 분석에 집중한다.

Hsieh와 Shannon(2005)은 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곧 자료를 귀납적으로 범주화하고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전통적 내용분석, 기존이론을 연역적으로 적용하여 변수가 되는 기존이론과 해당연구의 자료를 비교하는 지시적 내용분석, 자료에서 특정단어와 내용의 빈도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서 연구현상을 설명하는 총괄적 내용분석을 말한다. 이처럼 질적 내용분석은 귀납적, 연역적, 수량적 접근이 모두 가능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 내용분석을 통해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이야기를 귀납적으로 범주화하고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폭력대처 과정이라는 연구현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부부폭력 피해자 10명 여성이다. 이들 중 3명은 상호폭력으로 가해자 신분이 되어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지지집단에 들어왔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세 명 여성들이 아내폭력의 피해자임을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배우자 전원은 보호처분을 받고 가정폭력 가해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부터 소개를 받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심층면접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심층면접은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되었다. 사전에 준비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연구참여자 1명당 1회(1시간 30분-2시간 소요)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7층에 마련된 상담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필사작업은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녹음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녹음된 음성파일을 웹상에서 텍스트로 자동변환 해주는 다글로(구, 리뷰와이저) 프로그램을 통해 초벌 필사작업을 진행하였고,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학생 1명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무자 1명이 수정보완 작업에 참여하여 필사를 완성하였다. 기록에 참여한 이들은 참여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였다.

본 연구는 1회기 인터뷰 진행으로 자료의 포화상태에 이르지 못하였고, 10명 참여자들의 국한된 경험으로 연구현상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협조로 연구현상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할 수 있었고 유사한 경험을 한 10명 여성들로부터 폭력대처 과정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요건은 연구의 질 확보를 위한 질적 내용분석의 준비단계가 요구하는 표본추출과 자료수집의 핵심 사항이기도 하다. 자료로부터 개방코딩, 코딩묶음, 하위주제 도출, 범주형성 등을 순차적으로 도출하고, 이 결과들을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자료분석

질적 내용분석은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자료의 구조와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Elo와 Kyngas(2008)가 질적 내용분석의 진행과정으로 소개한 준비단계(분석단위 선택, 선택한 단위의 표면적 의미와 잠재적 내용분석), 조직단계(개방코딩, 코딩분류, 범주형성 및 범주분류), 보고단계(분석과정 보고, 스토리라인으로 결과보고)를 가이드라인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초기에 주제분석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으나 분석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도출되어 범주들을 수렴하는 주제들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가능했다. 엄밀하게 보면,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을 진행한 후에 Braun과 Clarke(2006)가 주제분석 과정으로 제시한 주제 찾기, 주제 확인하기, 주제정의 및 명명하기를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작업은 수기로 초벌분석을 진행하고, 2차 분석부터 질적 자료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Nvivo12을 사용하여 분석과정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고 상호비교를 통해 분석한 의미가 빠짐없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연령은 20대 1명, 30대 2명, 40대 2명, 50대 3명, 60대가 2명이며, 학력은 중학교 졸업 4명, 고등학교 졸업 2명, 전문대 졸업 1명, 대학교 졸업이 3명이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배우자와 살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I, J, E만 출가, 분가한 자녀들이 있고 그 외에는 자녀들과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I, J만 재혼가정이며 J는 동일 배우자와 재결합한 경우이어서 엄격한 의미의 재혼가정은 I에게만 해당된다. 참여자들 가운데 3명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7명은 전업주부이다. 배우자들 경우에는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직업을 갖고 있었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제적 여건을 중간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원가족 내 폭력이 있었다는 참여자는 1명이며, 원가족 내 부모이혼, 심한 차별경험, 심각한 빈곤경험, 부의 이른 사망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 등을 겪었다는 참여자가 4명이다. 남편들은 5명이 원가족 내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뿐 아니라 부모이혼으로 인한 분리경험, 돌봄의 부재, 심각한 빈곤, 더부살이 과정에서의 차별과 학대경험이 혼재되어 있었다. 폭력이 없었거나 폭력여부를 모르겠다는 나머지 배우자들도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분리, 부모이혼과 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보육원 생활, 일찍 사망한 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심각한 갈등, 복잡한 가족사(혼외자녀)로 인한 가족개념의 혼란 등을 언급하고 있어 가해 배우자 대부분이 성장과정에서 애착 문제, 자아형성 문제,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 사회성 문제 등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연구참여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1〉 일반적 특성

참여자 연령 *<남편>*	직업	초혼 vs. 재혼	동거 가족	경제 수준	교육	원가족 폭력	상담 경험	폭력 행동	경찰 신고	보호 처분	자조 모임
A **37**	주부	초혼	딸(11), 아들(10), 배우자	중	전문대졸	유(부)	유	무	행인	피해자	참석
<41>	*<일본어 가이드>*	*<초혼>*			*<고졸>* *(일본어학 연수)*	*<유(부)>* *(부모이혼/분리)*	*<유>*	*<신체폭력>*		*<가해자>*	

B 28	주부	초혼	딸(6), 아들(4), 배우자	중	고졸	무 (부모이혼/계모)	유	유 (대응폭력)	아내	가해자 (상호폭력)	참석
<33>	*<서비스직-가전판매>*	*<초혼>*			*<고졸>*	*<무> (부모병환/분리)*	*<유>*	*<신체감금>*		*<가해자>*	
C 46	중국어 강사	초혼	딸(15), 아들(12), 배우자	중	대졸	무	유	무	아내	피해자	불참
<47>	*<건축기술>*	*<초혼>*			*<대졸>*	*<유(모)>*	*<유>*	*<신체폭력>*		*<가해자>*	
D 59	주부	초혼	아들(29), 딸(28), 아들(23), 배우자	중	중졸	무 (빈곤심각/공장일)	유	무	주민	피해자	불참
<62>	*<용접기술>*	*<초혼>*			*<초중퇴>*	*<유(부)> (빈곤심각/학대)*	*<유>*	*<신체폭력>*		*<가해자>*	
E 49	주부	재혼	[현재는] 배우자, [전남편과 사이에 난 딸(30), 아들(29)은 분가]	중	중졸	무 (부사망/빈곤심각)	유	무	아내	피해자	불참
<52>	*<건축칠거>*	*<재혼>*			*<중졸(?)>*	*<모름> (부모이혼/보육원)*	*<유>*	*<폭언, 신체폭력>*		*<가해자>*	
F 32	전자부품조립	초혼	딸(11), 아들(9), 배우자	하	중졸	무 (빈곤심각)	유	무	주민	가해자 (상호폭력)	참석
<48>	*<영업용택시>*	*<초혼>*			*<중졸(?)>*	*<무> (가족갈등심각)*	*유*	*<신체폭력> (알코올)*		*<가해자>*	
G 50	주부	초혼	아들(23), 아들(16), 배우자	상	대졸	무	유	무	아들, 아내 [남편이 신고한 적도 있음]	피해자	참석
<53>	*<건축업>*	*<초혼>*			*<대졸>*	*<유(부)> (부사망후 모의학대)*	*<유>*	*<모든 형태의 폭력>*		*<가해자>*	
H 63	양복점	초혼	딸(37), 아들(35), 배우자	상	고졸	무	유	무	아내	피해자	참석
<65>	*<양복점>*	*<초혼>*			*<중중퇴>*	*<무> (부의 이른 사망)*	*<유>*	*<신체폭력> (의처증)*		*<가해자>*	
I 55	장애인활동보조	초혼	딸(33), 딸(28), 아들(19), 배우자 [딸들은 출가, 분가]	상	대졸	무	유	유 (대응폭력)	아내 [남편이 신고한 적도 있음]	피해자	참석
<63>	*퇴직*	*<초혼>*			*<대중퇴>*	*<무> (복잡하게 얽힌 가족사)*	*<유>*	*<언어, 신체폭력> (의처증, 알코올)*		*<가해자>*	
J 63	주부	재혼(동일배우자와 초혼, 재혼)	딸(37), 아들(34), 배우자 [딸은 출가]	중	중졸	무	유	유 (대응폭력)	아내	가해자 (상호폭력)	참석
<65>	*<중장비기술>*	*<재혼> (동일배우자와 초혼, 재혼)*			*<중졸(?)>*	*<유(부)>*	*<유>*	*<신체폭력> (외도문제)*		*<가해자>*	

2. 질적 내용분석 연구결과표

	주제	범주	하위범주(주제)	의미내용
폭력의 맥락	상반된 삶의 태도와 행동양식	서로 다른 기대	보호받지 못한 삶-어려서부터 생긴 상처와 결핍	시아버지의 폭력으로 부모이혼, 외조모 밑에서 성장
				시아버지의 폭력과 외도, 어린 시절부터 더부살이 하면서 온갖 학대를 경험
				부모이혼, 모의 재혼, 보육원에서 자란 남편
				혼외자식, 복잡하게 얽힌 가족사
			다른 현실을 꿈꾸었던 삶-친정부모가 겪었던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음	새엄마 밑에서 성장, 어려서부터 받은 차별과 상처, 벗어나고 싶었던 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서부터 학업중단하고 공장생활
				부의 이른 사망, 부의 부재로 6남매를 키우며 잠시도 쉴 수 없었던 친정엄마
				비가 새는 집. 유일한 꿈이 부모님께 괜찮은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것
		기대에 근거한 선택	아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사람, 뭐든 다해주려고 했던 사람
				자상하고 배려심이 깊고 멋있는 사람
				자상하고 좋았던 남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택	도피처이자 출구로 선택한 결혼
				남편의 성실함을 믿고 결혼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
		기대와 현실의 상반	다른 사람의 출현(결혼한 남자는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있음)	가부장적이고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음
				사소한 자극에도 격분, 지배적이고 과민함
				술을 마시지 않으면 표현이 거의 없는 남자
				음주 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남편
			본인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남편,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해주기를 원하는 남편	가정보다 친구가 우선인 남편, 자신이 무엇을 하든 아내가 지지해주길 원함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남편
				음주 후 가족들을 괴롭히고 자신이 가진 불만을 가족들에게 푸는 남편
				음주 후 아내를 의심하고 모든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리는 남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해주기를 원하는 아내	아이들 앞에서만이라도 폭력사용을 중단하기를 원함
				아빠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함 (육아에 참여하지도 않고 아이들과 놀아주지도 않는 남편)
				아내에 대한 의심을 그만두기를 원함
				외도를 중단하기를 원함
	폭력 전후	자극 불허의 삶	자극이 없는 삶을 원하는 남편 (오직 이해와 수용만 원함)	자신을 가만두지 않고 자극해서 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남편

	상황			남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발생하는 폭력(예측불가), 본인입장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바로 폭발하는 남편
				충동조절이 되지 않고 술을 마시면 트집을 잡고 밥상을 엎고 길에서도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
			자신이 무엇을 하든 문제 삼지 말라는 남편	자신을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남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그냥 지켜만 보라는 남편
			자극에 대한 응징폭력	아내가 외도에 대해 따지자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감)
				시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운전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한 남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말리자 폭력을 사용하는 남편
		결혼의미 상실	내용(의미)상 막을 내린 결혼	폭력이후 찾아온 절망감. 결혼실패, 인생실패, 자괴감 엄습
				폭력발생시점부터 함께 살아도 진정한 부부는 아니라고 생각함
				동경했던 한국에서 철저히 파괴된 꿈
			남편과의 분리, 독립된 삶에 대한 갈망	남편과 독립된 삶을 갈망하게 됨
				임신한 상태에서 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고민
				한국을 떠나고 싶으나 아이들 때문에 떠나지 못함
폭력대처 변화과정	대처 과정	대처불가 상황	생각하지 못한 신고 (관계에 대한 너무 많은 고려)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없어서 신고하지 못함
				아이들과 친구들에게 노출될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함
				남편 처벌로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어 신고하지 못함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	친정엄마에게 말하지 못함(첫 남편의 폭력을 목격했던 친정엄마)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음 (가십거리만 됨)
				부모형제들에게 말하지 못함 (남편에게 흉이 될 이야기)
				주변의 베트남 여성에게 알리지 않음 (비교되는 것이 싫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친정과 시댁	친정식구들이 남편의 폭력을 알게 되었으나 어떻게 하지 못함
				시댁식구들에게 남편의 폭력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함
				참으라고만 하는 시어머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시누이들
		에기치 않은 도움	달라지지 않는 남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자포자기, 아이들과 함께 수차례 죽을 결심
				또다시 외도를 하고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남편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준 낯선 사람들	주변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함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출동 (고맙고 창피한 마음)
			가까운 지인,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없음을 확인	집을 나왔다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친정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돌아갈 친정이 없음 (오히려 꾸짖기만 한 친정엄마)
				철저히 남편과 입장을 같이하는 시댁
		공공기관의 도움 수용	공권력 앞에 위축되는 남편	공권력 앞에 한 없이 작아지는 남편
				폭력이 범죄, 법적처벌 대상이라는 데 겁을 내기 시작한 남편
			공공기관에 도움요청	죽음을 생각하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고
				주변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신고가 폭력자제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
				살인사건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 신고
				경찰에게서 배운 폭력대처방법-맞지 말고 피하고 주먹 올라오면 바로 신고
				남편 모르게 신고하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온 것이라고 이야기함
			상담기관의 도움 수용	경찰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에 상담소로 연결됨
				남편의 의처증으로 폭력이 지속되면서 상담소까지 오게 됨
				경찰신고가 상담소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
	대처 과정에서 남편의 변화	두 유형의 가해자	피해자 코스프레	신고도 자신이 먼저하고 자신이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남편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이혼하겠다는 남편
			심경의 변화를 보이는 남편	이혼직전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한 남편
				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하게 된 남편
				언어/신체폭력자제,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고자 노력하는 남편
		두 갈래의 길	상담소에 불만을 제기하고 가족에게 화풀이	자신을 죄인 취급한다고 상담소에 불만을 제기하는 남편
				상담자를 인정하지 않고 힘들게 하는 남편
				교육 후에도 똑같은 남편, 아내를 원망하고 가족에게 분풀이를 하는 남편
			태도변화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술을 마시지만 가족들을 괴롭히지는 않음, 술을 마시면 찜질방에 가서 자고 오는 남편
				교육을 통해 갈등해결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함
		두 개의 결과	달라지지 않는 남편 (폭력은 자제)	달라지지 않는 남편, 도움을 수용하지 않음 (폭력만 자제)

				다른 변화는 없으나 폭력은 자제
			가족을 위해 변화를 선택 (아내가 원했던 삶에 근접해가는 남편)	상담이 전환점이 됨 (자기만 생각했던 삶에서 가족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
				단주를 시작한 남편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구분하기 시작한 남편
	대처 과정에서 아내의 변화	세상을 향해 열림	쌓였던 울분이 올라옴	상담은 받고 있지만 누적된 울분이 올라오는 상황
				남편에 대한 연민과 울분이 동시에 생김
			위축된 삶에서 사회적인 삶으로 확장	집에만 있지 않고 외부활동을 시작함
				상담과 교육, 지지집단 참여가 새로운 기회가 됨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준비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생각하게 됨
				변화가 시작됐지만 남편을 완전히 믿지는 않음, 독립적인 삶을 준비해 나가려고 함
		회복을 위한 노력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기 위해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	부부폭력으로 아이가 받은 상처, 후유증이 너무 큼.
				참고 견딘 세월이 아이에게 큰 문제로 나타나면서 남편의 폭력을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됨
				아이들을 향한 폭언, 학대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함
			상담에서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	술 취한 남편에게 비난이나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함
				따뜻한 태도, 맞대응 자제,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폭력적인 행동의 징후가 보일 때 바로 도움요청
			어려서 꿈꿔왔던 삶을 살기 위한 비장한 노력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폭력문제를 노출하게 됨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함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혼자서도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함
	대처 과정의 재구성	회피전략의 실패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폭력사실을 은폐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한편, 남편의 행동을 이해시키려고 함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계부의 폭력을 말하지 못함
				경찰출동으로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음
			남편 귀가 시 숨거나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폭력을 피하고자 함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이 확대되자 최대한 남편과 아이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함
				아빠 소리만 들려도 이불 속으로 숨는 아이들
			집요한 남편의 폭력, 더 심해진 남편의 학대	밤늦게 들어와 아이들을 깨우고 괴롭히는 남편, 아내가 말리면 더 심해지는 폭력

				자는 아내를 깨워서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바람을 피우면서 더 심해진 남편의 폭력
		가족 연속체	아이들에 대한 학대 지속	아이들에게 신체적 폭력, 가학적 태도, 휴대폰 파괴, 언어폭력 등을 지속하는 남편
				아이들 앞에서도 조절되지 않는 남편이 성적 폭언
				폭력을 말리려다 폭력에 휘말리게 된 아이들
			아이들의 정신건강문제, 학교부적응문제, 일탈행동	불안 행동, 어른기피, 욕설, 폭력으로 문제해결. 친구들에게 폭력사용
				아이들의 일탈과 방황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해결 불가능	경찰신고 후 남편의 폭력자제 상황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
				아동학대기관의 개입으로 아이들에게 가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자 함
				부모가 변화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들
		사적 도움의 한계	가까운 가족, 지인, 그 누구도 도움을 주기 어려움	친정, 시댁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모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폭력상황 자체를 모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아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거리만 됨
				아들의 폭력을 방임하고 도왔던 시어머니(신고하지 못하게 함)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는 시댁식구들
			피해자가 비난받는 상황	남편의 의심을 그대로 믿는 시댁식구들
				남편 이상으로 힘들게 한 시어머니
				딸을 비난하는 친정 엄마
		공적개입의 효과	법적 제재가 폭력을 자제하게 함	경찰신고가 폭력을 자제하게 함
				상담을 받으면서 폭력자제
				다른 변화는 없어도 폭력은 자제
			보호처분을 통해 폭력이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게 됨	교육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인식
				아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
			공적 개입을 통해 심경변화와 태도변화를 보이는 가해자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부부갈등해소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폭언, 폭력을 자제하고 생활태도를 바꾸려고 함
		피해경험을 통한 자각	폭력대처의 중요성	폭력을 감수하고 살게 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가족구성원 모두 상처만 받게 됨(심각한 정신건강문제 발생, 자살위험성 증가,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 심각)
				가해자를 방치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폭력수준만 증가하게 됨

경험적 지식	경험한 도움영역		폭력대처방법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하고 가해자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피해야 함(함께 흥분하지 말아야 함). 그래야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가정폭력 개입에 있어 가정폭력 관련 기관뿐 아니라 아동학대기관의 동시개입 필요
				경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 안전점검, 대처방법 안내 등이 큰 도움이 됨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주변사람들은 돕는 데 한계가 있음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찰, 법원 등 국가기관
			도움이 필요한 부부	부부 중 한사람이도 내면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각각에 맞는 상담과 치료가 필요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사회활동과 독립적인 삶을 위한 준비 필요
		도움요인	법적인 강제	가해자에 대한 법적처분(상담명령)
				폭력자제 효과
			가정법률상담소	상담과 교육을 통한 태도변화
				가족관계 회복
			지지집단	그동안 쌓인 울분을 풀 수 있는 기회
				위로와 지지
			일과 활동	스트레스 해소
				독립생활에 대한 준비
			종교 또는 초월적 접근	절대자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음
				초월적인 비방이 폭력자제에 도움이 됨
		공존의 전제	허용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상대에 대한 감정적 대응자제
				폭언과 폭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상담과 치료, 훈련	대화법 훈련(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순화된 표현), 부부상담, 부모교육
			부부 공동노력	관계개선을 위해 부부와 가족이 함께하는 공통의 취미활동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
		다른 피해자를 위한 조언	폭력의 끝은 상처와 악	폭력을 견딘 결과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
				신고를 겁내지 말아야 함, 신고를 하지 않으면 더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폭력에 대한 불관용 원칙	피하고, 신고하고, 돌봄을 받아야 함(맞고 있지 말고 주먹이 올라오면 무조건 신고)
				차분하게 대처하는데도 폭력을 사용하면 반드시 경찰신고
				폭력에 대한 불관용과 자기돌봄이 수반되어야 가족관계유지 가능
			이야기해야 살 길이 열림	자존심만 내세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지지집단에 참여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야 함
	요청되는 도움 영역	법과 제도개선	부부대상 프로그램 의무화	예비부부를 위한 부모교육과 부부상담
				갈등해결방법, 대화훈련
			경찰관련 제도 개선 사항	경찰조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신고이후 연결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구체적 안내/정보
				폭력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자녀 대상 개입	자녀를 둔 부부폭력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기관의 개입
				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을 위한 지원
			피해자 지원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모임 제공
			가해자 지원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정신건강전문의의 슈퍼비전을 전제로 기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병행 필요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3. 폭력의 맥락

1) 상반된 삶의 태도와 행동양식

(1) 서로 다른 기대

연구참여자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부모의 학대, 외도, 이혼, 분리 등을 겪으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내에게 그 결핍을 보상받기 원하며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일방적인 요구를 한다.

>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빠한테도 많이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제가 맞은 얘기를 시댁에 하는 것을 되게 속상해 하는 거야. 이혼하면 이혼했지 절대 말하지 마라. 그 이유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았기 때문에 알면 우리 엄마가 속상할 거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A)

> 어머니는 이혼하고 재혼해서 사시는데 남편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남편이요. 좀 이기적이고 그렇죠. (E)

> 자기는 항상 초등학교도 졸업 못 했다, 4학년 다니고 말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친척 고모 집에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바닷가인데... 저희 남편을 엄청 때렸나 봐요. 너무 잔인하게. 내 생각에는 그 때 저희 남편이 너무 쇼크를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이 거기에서 멈춰 버리지 않았나... 뭔가 맺혀 있는 거예요. 강자한테는 못 대들고, 약자한테만 대드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당해온 그거를. 나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겠다는 이런. 그래서 보면, 항상 딸하고 저에요, 상대가. (D)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에 폭력경험보다는 아버지의 부재, 가족 내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었다. 이들의 경험은 결혼 선택 과정에서 원가족이 겪었던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기대를 만들게 된다.

저도 많이 못 배웠어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안 보내 주고... 바로 위 오빠를 선택하다 보니까, 제가 좀 중간에서... 외가에 가서 구멍가게를 봤어요.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미래를 생각해서 사촌 언니 따라 서울에 왔어요. 열여섯이나 열일곱 살 때. 고등학교를 못 들어간 거죠. (공장에 들어가서) 꽤 오래 했죠, 나이 먹을 때까지... 스물 일곱인가 여덟인가. (D)

(아버지는) 잘 기억도 안나요.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6남매. 우리 어머니가 너무 희생을 많이 해서... 함지박 메고 매일 장사하셨어요. 머리에다 동그란 거 이고 다니시면서... 잠시도 가만 안 계셨어요. 우리 언니가 목포에서 사셨거든요. 염전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또 자랐어요. 언니가 제주도에 아는 지인이 있다고 저를 제주도로 보냈어요. 가정환경도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거기서도 행복한 시간을 못 보냈어요. (E)

집이 못 살았거든요. 비 떨어지면 잠 잘 때도 없고 이렇게 (비가) 똑똑똑 막 떨어지거든요. (비가) 새는 집에서... (F)

(2) 기대에 근거한 선택

결혼 전 남편은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삶을 실현시켜줄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연구참여자는 오랜 시간 품어왔던 염원을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배우자와의 결혼을 선택한다.

결혼 전에는 자기가 돈 벌고 그러니까, 저는 학생이고. 암튼 뭐든 다 해 줬어요. 자기가 돈이 있으니. 다 해주고 참 순했어요.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되게 순진하게 봤었거든요. 사람이 때 묻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I)

거리가 멀었는데도 남편이 매일 저를 보러 오고, 제가 늦잠 잘까봐 아침마다 모닝콜을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때는 반했죠. 엄청 잘해 줬어요. 그때는. (C)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기간동안 취업을 했는데 아시는 분 선배로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가부장적이지 않았고 다정했어요. 이해심도 많았었는데... (B)

예외적으로 결혼 전부터 폭력성을 나타낸 배우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당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우자(당시 데이트 상대)의 폭력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 한 번은 진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뺨을 너무 세게 맞아서 응급실까지 갈 상황까지 되었는데, 남편이 돈을 구해오겠다고 나갔다가, 그 다음 날에 돌아오더라고요 그 상황이 멀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어요. 그때는 뭐 연애할 때 이었으니까... 젊어서 그런 것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 성격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던데, 이상하게 그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G)

(3) 기대와 현실의 상반

결혼 후 배우자는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자기만 수용해주기를 원했다. 여기에 알코올과 외도 문제,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결합되어 연구참여자를 무척 힘들게 한다.

> 육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이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혼자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있으면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사람이라고 믿어서 결혼한 건데 제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달라졌다고 해요. 그 전에는 본인이 하는 것을 다 응원해주고 좋아했는데 왜 결혼 하고 나니까 싫어하냐? 자기는 변한 게 없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다 이해하다 지금 이해 못 해 주는 제가 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A)

> 저녁에 안 좋은 전화가 온 거 같아요. 빨래를 널고 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널었거든요. 그랬다고 폭력을 어떻게 심하게 했는지... 제가 애를 지워버리고 이혼하려고 생각했어요. (C)

> 술 먹고 느지막이 왔기에 밥을 차려주면서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뭔 말이 많으냐고 밥상을 팍 엎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시달리니까 옆에 공원에 가서 손수건을 물고 펑펑 울다가. 소리 내서 울면 주위에 사는 사람이 무서워할까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TV를 부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가 남자다 가장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지, 아무튼 그래요. (D)

2) 폭력 전후 상황

(1) 자극 불허의 삶

배우자는 아내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자신을 부당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놔두고, 잘못된 행동이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아내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친구 집들이 갔다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술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시댁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본인이 감정이 격해졌나 봐요. 시댁 얘기 나오자마자 너무 자극적인 말을 한 거 같진 않은데... 저희 쪽 집(친정)을 먼저 얘기를 해서 시댁은 어떻다 말을 했더니... 너는 좀 맞아야겠다고 하더니 머리를 확 눕혀놓고... 그래서 차를 세웠죠. 저는 눕혀진 상태에서... 머리를.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로 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들으셨나 봐요. 바로 앞에 또 경찰, 파출소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 주셨고 경찰 세 분이 오셔서 떼어냈는데도 분을 못 삭이고 계속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A)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3-4년 전에. 그때부터 폭력이 최고조로 치달았거든요... 제가 그것에 관해 자꾸 토를 달고 그러니까... 한 번은 저쪽 어딘가에 트럭들만 모아놓는 허름한 주차장이 있어요. 아무도 안다니더라고요. 휴대폰도 뺏고 제 안경도 뺏고 녹음할까봐 휴대폰 전원도 끄고 죽이겠다고 데리고 간 거야 거길. 밤에 한 밤중에. 제가 그때 진짜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G)

집에서 계속 술을 먹더라고요. 그게 한 2년 3년 되더니. 약간 이상한 소리도 하고... 뭐

눈빛도 변한 것 같고 사람이 안절부절...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무튼 상스러운 욕을 하고. 바람 뭐 그런 욕하고 암튼 애들 듣기 너무 창피스러운 그런 욕 있잖아요. 그 때 제가 간호조무사 공부하고 있었어요. 야간에. 그 학원까지 쫓아와서, 바람이 나서 뭐 어쩌고 취직시켜주지 말라는 등... (학원에) 거기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분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술 먹고 와서 주먹이 날라 오는 거야. 죽일 것 같이 막 때리는 거예요. (I)

(2) 결혼 의미 상실

연구참여자들에게 폭력은 부부관계의 손상과 기대했던 가족공동체의 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한다. 내용상 막을 내린 결혼생활은 새로운 삶, 남편과 분리된 독립적인 삶을 갈망하게 하였다.

때렸을 때 이혼한 거다. 그깟 도장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때렸을 때 이미 이혼한 거예요. 저 사람 못 믿는데 그게 이혼 한 거지 그게 사는 거냐고 말로만 사는 거지. (H)

더는 지속할 수 없겠구나,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싶었어요... 모르겠어요.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더 불행해진 것 같았어요. (B)

그냥 안 살고 싶고 다시 베트남 돌아가고 싶어요. 애기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자살도 생각했어요. 발악해 봐야 그것도 안 되니까. 요즘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돈 있으면 방 하나 얻어, 애기 데리고 살고 싶어요. (F)

4. 폭력대처 변화과정

1) 대처과정

(1) 대처불가 상황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가정폭력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 주변사람에게 이야기한 참여자도 개인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된다. 자녀와 가해자 포함 현재 가족의 안위와 생계를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것 알면 우리 형제들이 알면, 또 동생이 불행하게 산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좋게 잘 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첫 남편도 폭력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봤으니까요. (첫 남편이) 세상 뜨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저 인간 잘 갔다고 한 적이 있어요. (재혼하고 두 번째 남편이 똑같이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을) 그런 말을 제가 전혀 안하니까요. (E)

머리를 때려요 뺨도 때리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번호까지 눌렀다 다시 끊어버렸어요. 경찰이 오면 애들한테 안 좋을까봐. (아이) 친구들이 놀리겠죠, 저 집은 아빠가 저렇게 했다. 그래서 전화를 꺼버렸어요. 애들을 위해서. (C)

친구한테는 얘기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제 흠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혼전임신해서 결혼한 것도 말이 많았는데,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면 다 말이 도는 거죠.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한테 얘기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제가 못 참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네가 참아야 된다, 남자 다 돌아온다, 네가 참고 인내하면 더 나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셨죠. (B)

(2) 예기치 않은 도움

배우자의 폭력은 더 심해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시간이 누적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타살과 자살의 경계가 모호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참여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되었다.

오죽하면 남편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다른 사람은 심장마비 걸려서도 빨리 죽는다는데, 왜 안 죽지? 그러니까 그게 남편한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 둘 중에 누가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G)

남편이 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눈이 뒤집어지면 자제를 못 해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요... (신고) 그런 건 생각도 못 했죠. 생각도 못하고 계속 살아왔는데 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컸던지 주민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파출소에서 온 거예요. 주위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고맙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D)

그 때 한국말도 잘 못하고 동네사람들도 시끄러우니까 신고를 해 주었어요. 애기 아빠라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맞고 그랬거든요. (동네에서 서로 다른 세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도 걸고... (F)

(3) 공공기관의 도움 수용

배우자들은 경찰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다. 비록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도움 요청이지만 공식적인 사회기관은 연구참여자들에게 강력한 지지체계로 자리 잡게 된다.

(남편이) 술 먹으면 화가 좀 많아요. 술을 먹다가 대화를 하는데 싸움이 났어요.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신고를 했어요. 그 주사 때문에. 그 때 경찰이

오니까 진정이 되더라고요. 경찰이 온다니까 집을 나가 버리더라고요... 좀 주눅이 들어서 왔어요.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밖에서 몰래 봤대요, 경찰분이 올라가시는 거를. 그 뒤로 주사를 안 부리더라고요. 또 그런 일 있으면 경찰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더니. (B)

여경 계에서 저한테 이런 방법이 있다, 폭력에 이렇게 대처하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떠시냐? 남편은 어떠냐? 물었어요. 내 편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해줬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말하면 많이 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어떻고, 빨리 피하라, 쉼터로 가라는 등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 (상담소) 여기 와가지고 상담치료를 6개월인가 받고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2번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경찰이 오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서 그러는지. 아무튼 저는 거기서 느꼈죠. 공권력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너무 몰라서 무지해서. 그 때 대처를 잘 했으면 이런 과정, 너무 힘든 과정이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I)

2) 대처과정에서 남편의 변화

(1) 두 유형의 가해자

보호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배우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며 변화를 선택하는 두 종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의 선택이기도 하다. 문제의 원인을 아내에게 두는 남편은 자신을 범죄 누명을 쓴 억울한 사람 또는 부부폭력의 피해자로 인식하였다.

경찰신고를 왜 하게 됐냐면 남편이 아들이랑 싸우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본인이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경찰에 신고했나 아빠랑 싸우다가. 남편도 아들한테 맞았다고 신고하고. 저도 신고하고. 저희 아들이 진짜 많이 맞았어. 아들이 아빠한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맞은 것 같아. 공부 못 한다고. 계속 경찰에 신고하니까 폭행이 좀 줄어들었어요. 못 때리니까 욕을 하는 거야. 계속 욕.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몰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거다. 본인이 한 건 다 잘못이 아니에요. 남이 하면 잘못이야 똑같은 경우에도. (G)

(경찰신고와 보호처분이후) 남편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어떤 영화를 봤대요. 손님들도 있고 그런데 감정조절이 안 되었나 봐요. 절대 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선택했고 결혼한 사람인데 이렇게 미워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데요... 그 이후에 상담도 오게 됐고, 뭔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후 아직까지 큰 싸움이 없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저도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저도 강의 듣고 도움이 됐던 것도 있고. 좋다 계속 얘기를 해 줬고 같이 캠프 가게 되었고. 지금 여기 오는 것에 대해 거부반응이 없어요. (A)

(2) 두 갈래의 길

배우자들은 가족과 상담소에 불만을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화풀이를 하거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뉘었다.

아령으로 나를 때리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이 와서 말렸어요. 말리니까 위험하잖아요. 신고를 했더니 자기를 폭력배 만들었다고 오히려 나한테 이혼소송을 한다고... (H)

부부상담, 부모교육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성당에 같이 다니고. 쉬는 날에도 귀찮아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집안일도 해 주고, 아이들 밥도 대신 해 준다고 하고 많이 변했어요. 가정적으로. 상담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다투지 않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작은 일에도 금방 싸웠는데, 서로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다투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이제 다툼이 시작될 것 같다 그럼 한 템포 쉬는 거죠. 서로 좀 시간을 갖고 다시 얘기하는 거죠. 대화의 방법이 바뀌었어요. 아빠도 요즘에는 많이 져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된 거죠. 노력하는구나 싶어서 저도 조금 여유로워졌어요. (B)

(3) 두 개의 결과

배우자들에게 나타난 보호처분의 공통된 효과는 신체폭력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만 폭력을 자제하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폭력이 범

죄라는 인식을 갖고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구분하게 된 결과로 양분된다.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도 바람피우다 아내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자) 모기장, 던지면 펴지는 걸 가위로 다 찢어놓은 거야. 칼을 소파에다가 찔러놨어. 그래서 신고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받고 있는 거야. 폭력은 안 해. 오늘날까지 여기 와서 상담을 받잖아... 꼼작 못하게 하니, 성가셔서 안 한 거야. 교육을 받고 집에 와서 화를 내는 거야. 화낼 사람은 난데. 거기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오면 화를 내냐고 우리 아들이 그래. (J)

상담을 받고 들은 내용을 머리에 잘 담아가지고... 막말이 줄어들고 폭력도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윗도리를 안 입고 살았거든요.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고쳐졌고요. 5개월 동안 상담 받으면서요. 그게 고맙고 감사했어요. 술 마시면 대화 같은 것도 하려고 해요. 좋은 말도 해주더라고요. 우리 잘해 보자 이러면서. 좀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E)

3) 대처과정에서 아내의 변화

(1) 세상을 향해 열림

상담을 받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것을 상담자 앞에서 표현하고 동료 피해자들과 교감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켜켜이 쌓였던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다. 또 위축되었던 삶에서 다양한 외부활동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평이 확대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남편에게 의존했던 삶에서 자신이 중심이 된 독립적인 삶을 지향하기 시작한다.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나만 집에서 안일하게 살았구나. 진작 사회생활도 하고 그럴걸. 동네 아줌마만 만나지 말고.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70, 80살이든 이혼은 꼭 하고 싶어요. 진짜. (G)

(2) 회복을 위한 노력

연구참여자들은 본인과 자녀들의 상처와 고통에 주목하게 된다. 대처과정 초기에는 아이들에게 줄 상처를 생각해서 경찰신고를 주저했으나 그럴수록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가중되고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나타냈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폭력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가족연속체의 회복이 가능하고 가해자도 치유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한다.

> 저는 몰랐는데 첫째가 항상 불안해하는 모습이 학교에 가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제가 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 주어서 불안했던 거 같기도 해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안 불렀어요. 부모 싸움에 경찰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너무 충격이에요. 미취학 아동이었고, 우리 집에 경찰이 오는 것이 애한테 너무 충격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찰이 오면 아빠든 엄마든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 사람하고 이혼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아빠의 그런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속인다고 속을 나이도 아니고. 엄마 아빠라도 경찰이 올 수 있구나, 잘못된 행동이구나. 이것을 알려 줄 수 있는 나이인 거 같아요. (A)

4) 대처과정의 재구성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될까 두려워 폭력사실을 은폐한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아이들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 아빠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나보다. 너희들이 이해해라 하면서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죠. 때로는 아이들한테 잠깐 나가 있어라, 엄마가 아빠 주무시면 전화한다고. 웬만한 부분은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죠.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D)

> 이혼. 애들한테 상처 주는 게 너무 싫어요. 한 번 사별했고 또 이혼하면 남자 두 명을

잃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폭력행사를 할 때) 하지 말라고, 제발 부탁이라고 그러죠. 애들 없는 데서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서너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딸은 못 본 것 같고. 예민했어요. 방황하고 그랬어요.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해도 애들한테는 그게 상처인가 봐요. (E)

배우자의 폭력은 자녀에게도 향해 있어 연구참여자가 그 영향을 차단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부적응문제, 정신건강문제, 일탈행동을 보였다. 가해자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이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도움을 수용하게 된다. 부모가 변하면서 아이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신고와 상담서비스, 아동학대 개입, 그리고 아이 상황에 맞는 치료개입이 연결되어야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자신을 지켜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들이 폭력적으로... 중학교 사춘기 오면서부터 화가 나면 문을 치고 때리고 유리도 깨고... 애가 자살하면 되지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팔을 긁어놓고 자해하고. 유리 다 깨서 손을 다치고요. 2학년, 3학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애가 힘들게 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면 어떡하나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들이 많이 안 좋아서 작년에 휴학을 하고, 고등학생인데. 아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주어서... 작년에 많이 노력해서 복학을 시켰거든요. 그 후로 아들은 극복했어요. 걔도 상담을 받게 만들었죠. (I)

내가 왜 신고했는가 하면요. 내가 계속 맞고 가만히 있으면 딸들도 나중에 이런 남자를 만나 맞으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제가 신고했어요. 맞고만 있지 말고 저항해서 징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요. (C)

5. 경험적 지식

1) 경험한 도움영역

(1) 피해경험을 통한 자각

연구참여자들은 폭력 대처과정에서 주변사람들은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갈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폭력을 허용하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고 정신건강문제는 물론 자녀들의 부적응문제, 자살위험성 증가 등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폭력은 허용할수록 정도가 심해지며, 자제 호소, 설득, 비위 맞추기 등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개인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처음부터 법적 제제, 공적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다.

폭력의 징후가 보이거나 폭력이 발생하면 우선 피하고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폭력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자녀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이나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아동학대기관의 개입이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멈추는데 효과적이었으며, 기술훈련, 취업준비 등 독립적인 삶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되도록 말을 적게 해야 돼요. 화가 많이 났을 때는 화 풀리게 가만히 있고... 애들 앞에서는 되도록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폭력행동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겠지. 첫째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폭력을 하기 전에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소리 지르고 흥분하면 폭력성 있는 사람들은 더 흥분해서 더 때리는 것 같아요. (C)

(2) 도움요인

가해자에 대한 법적처벌과 상담기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상담소에서

진행한 상담과 교육이 가해자의 폭력자제와 태도변화에 큰 도움을 주었고, 전문상담과 지지집단 참여가 피해자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지지와 위안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한 가해자에 대한 개입과 아동청소년 전문상담 연결이 도움이 되었다. 그 밖에 직장생활, 종교활동,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 다양한 외부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유익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여기서(지지집단)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 동네사람이나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자유롭게 얘기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요. 그러니까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저는 걷는 거 트레킹 하는 거, 산에 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람들 만나면... 대화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경치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남편이 못 하게 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어... 일자리 있으면 불러달라고 항상 얘기해요. 지금은 바쁠 때만 도와주는 조건으로 나가고 있어요.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G)

(3) 공존의 전제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순화된 언어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의사소통기술 훈련을 받고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수용하는 대화를 하면서 감정대립이나 다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부부상담과 부모교육에 참여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에서 벗어나 배우자,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다가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단절된 가족구성원의 관계개선을 위해 가족이 공통의 취미를 만들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 서로의 마음을 읽어 주고 존중해주고 제가 항상 부탁해요.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게 싸움으로 갈 수도 있고 웃으면서 풀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려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 읽어주기 하고 표현만 조금 순화시켜서 하면,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알았어. 표현은 안하지만 속으로 받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A)

(4) 다른 피해자를 위한 조언

연구참여자들은 부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다. 폭력상황이 발생하면 피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을 지키고 자신을 돌봐야 한다.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폭력을 참고 사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상처만 준다. 피해자 지지집단에 참여해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내는 방법도 이야기하였다.

혼자 하지 말고 공권력 도움을 받는 것. 부모 형제가 도와주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해서 상담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신고해서 남편이 오픈이 될 수 있게. 공권력에 대해 주위에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I)

2) 요청되는 도움 영역 (법과 제도개선)

연구참여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추가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긴 시간 방치되기도 하였다. 경찰이 피해자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경찰조사 이후 제공되는 돌봄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방차원에서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며, 기혼부부 대상으로 부부갈등과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후조치로 폭력이 발생한 가족에 대한 공식기관의 지속적인 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및 상담지원, 가해자에 대한 정신건강치료, 피해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모임 지원을 언급하였다. 그 밖에 폭력피해로 이혼을 선택한 피해여성과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결혼이주 피해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진짜 화가 났던 게... 경찰서에 갔잖아요. 그 때 정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남편을) 보고 싶지도 않지만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경찰에게 제가 물어 봤어요. 지금 폭행을 당해서 왔는데 같은 방에 두면 어떻게 하냐? 저는 두렵고 보고 싶지 않다. 다른 방에

따로 있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었고, 다른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 거기서 2시간을 기다렸거든요... 도망 나오고 싶을 정도로 빨리 딴 데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 공간이 정말 싫었어요. (A)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부폭력 피해여성들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그 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경험적 지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0명 연구참여자들 간의 공통된 내용들을 범주화하고 도출된 범주들 사이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연구현상을 밝히는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연구의 전체구조는 〈폭력의 맥락〉, 〈폭력대처 변화과정〉, 〈경험적 지식〉의 세 개 중심축으로 구성되었다.

〈폭력의 맥락〉에서 첫 번째로 수렴된 공통된 범주는 '상반된 삶의 태도와 행동양식'으로, 세부내용은 성장과정에서 내면화된 [서로 다른 기대], 현실보다는 [기대에 근거한 선택], 서로 대립된 지향이 만들어내는 [기대와 현실의 상반]이다. '폭력 전후 상황'으로 묶인 공통범주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자기만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가해자의 [자극 불허의 삶], 또 다른 쪽에서는 일생에 걸쳐 염원했던 따뜻한 가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결혼 의미 상실]의 피해자 모습이 나타난다.

〈폭력대처 변화과정〉의 '대처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대처불가 상황]이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은 도움]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처음으로 경찰신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충격이 갈까 두려워서, 남편에게 범죄자라는 멍에를 씌울 수 없어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초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전히 경찰신고나 공적기관에 도움을 요청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해자의 폭력이 자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폭력에 대한 허용이 참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도움수용]으로 변화한다.

'대처과정에서 남편의 변화'는 폭력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가해자와 폭력성을 인정하고 자기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변화되는 가해자로 대비되는 [두 유형의 가해자], [두 갈래의 길], [두 개의 결과]로 정리되면서 두 지류

로 분화되는 가해자의 모습이 나타났다. ‘대처과정에서 아내의 변화’에서는 공적체계 내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지지집단에서 풀어내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조우하는 [세상을 향해 열림],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폭력 앞에서 단호해지고, 가정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수렴되었다.

‘대처과정의 재구성’에서는 참여자가 사용했던 과거 대응방식이 더 큰 상처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들이 [회피전략의 실패]로 모아졌고, 폭력을 중단시키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가족 연속체]로 정리되었다. 부부폭력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개인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은 [사적 도움의 한계]에 담겨졌다. 경찰신고와 상담소 이용 경험을 토대로 부부폭력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차원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자각이 [공적개입의 효과]에 나타난다.

〈경험적 지식〉에서 ‘경험한 도움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피해경험을 통한 자각]이다. 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중요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폭력대처방법,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곳,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부 등이 공통되게 묶여졌다. [도움요인]은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적 제재,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비슷한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지지집단, 사회적 출구가 될 수 있는 일과 활동, 자신을 돌보는데 도움이 되는 종교적 접근이다. 부부가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존의 전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교육, 가족이 공동체로서 회복되기 위한 부부 공동의 노력을 포함한다. [다른 피해자를 위한 조언]에서는 폭력에 대한 불관용 원칙과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요청되는 도움영역’은 [법과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부 대상 프로그램 의무화, 경찰제도 개선, 자녀들을 위한 개입, 피해자 지원, 가해자를 위한 정신건강치료,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외국문헌에서 밝힌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피적 대응은 배우자의 폭력을 부추기고 참여자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나아가 자녀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면서 아이들의 부적응문제, 일탈행동으로 이어진다. 이에 비해 경찰, 법원, 상담소 등 공식적인 지원체계를 활용한 접근방식의 대처는 신체폭력의 추

가피해를 줄이고,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관계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공공기관과 접촉하면서 여성들의 대처방식은 회피적 대응에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적극적 대응으로 바뀐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의 자녀학대, 자녀의 문제행동, 공권력 앞에서 위축된 남편의 모습과 중단된 신체적 폭력, 사적 도움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외국의 피해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참여자들은 사회서비스기관을 통한 대처전략이 폭력을 줄이고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을 꾀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다고 말한다. 피해경험을 토대로 여성들은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대처방법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동료 피해자들의 사회적지지, 자기보호, 자기돌봄, 감정조절, 일과 다양한 외부활동, 자기를 중심에 두는 독립적인 삶을 제안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대화기술과 공감기술,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동일한 한 곳 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피해자서비스를 받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연구참여자들은 폭력의 재피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찰신고와 처분명령을 들고 있다. 경찰과 검찰, 법원 관계자들은 본인들의 개입이 폭력재발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안전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상담소, 보호시설에 직접 인도하는 적극적인 원조,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폭력 관련 사회서비스기관들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서비스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재판이나 처벌기간 동안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이 함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례가 대다수다. 폭력재발 위험성과 위기상황에 따라 피해자 주거지 근처 출입금지 제도, 퇴거명령 제도, 위탁감호시설 등을 활성화하여 맞춤형 가해자-피해자 격리조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사건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조사 후에 동시 귀가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한다. 나아가 보호명령제를 적극 홍보하여 많은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명령 위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부부폭력 사건은 접수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의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

해 방어적 동기와 주도적 동기의 폭력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다른 형태의 사회적 개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녀의 안전과 보호는 피해자의 대처전략을 변화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은 자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가정폭력상담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실제 우리는 상담, 법률, 의료지원과 아동보호 등을 여러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만 전담하는 법원이 설치된 곳이 많아, 초기개입부터 재판과정 이후까지 피해자가 원스톱으로 법률지원과 보호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 자녀의 안전문제, 이혼 문제 등 가정폭력에서 유래하는 다양한 현실적, 법적 쟁점을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절차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직면한 문제와 요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상담과 동시에 법률, 의료, 폭력가정 자녀를 위한 서비스, 피해자 보호와 옹호서비스 지원을 한 곳에서 주관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 제공뿐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 배우자에게 덜 의존하도록 다각적인 자립지원방안들을 갖춰야 하겠다. 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을 줄이기 위한 차별금지정책, 부부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업정책, 다양한 취업 및 재취업 훈련정책이 그 예이다.

피해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각 여성의 복잡한 상황을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다차원적인 개입방법을 수립하고,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개입내용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한다. 그러면서 안전계획, 역량강화, 심리적 외상치유, 부모교육, 관계기술, 사회적지지 개발, 사회경제적 자원 확대와 제공, 공식지원체계 활용에 대한 독려 등은 공통적으로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회의 가치관을 전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도록 격려한다. 따라서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활발한 홍보는 피해자가 공권력을 활용해서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지해 주는 수단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언주. 2010.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행동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323-346.

장희숙·허남순·김유순. 2001.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회, 7, 231-254.

장희숙·황순찬. 2017. “부부폭력 가해여성의 체험: 생존폭력의 맥락적 의미”. 가족과 가족치료, 25(4), 883-909.

Anderson, K. M., Renner, L. M., & Bloom, T. S. 2014. Rural women's strategies responses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4), 423-441.

Bauman, E. M., Haaga, D. A., & Dutton, M. A. 2008. Coping with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7, 23-41.

Bowker, L. H. 1983. Battered wives, lawyers, and district attorney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1, 403-412.

Brabeck, K. M., & Gruzman, M. R. 2008. Frequency and perceived effectiveness of strategies to survive abuse employed by battered Mexican-origi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4, 1274-1294.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Burke, J. G., Denison, J. A., Gielen, A., McDonnell, K. A., & O'Campo, P. 2004. End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An Application of the Transferential Model. Journal of Health Behavior, 28(2), 122-133.

Bybee, D. I., & Sullivan, C. M. 2002. The process through which an advocacy intervention resulted in positive change for battered women over tim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 103-132.

Candy, B. E., & Babcock, J. C. 2009. The protective function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for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abus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8, 443-458.

Ca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Clements, C. M., Sabourin, C. M., & Spiby, L. 2004. Dysphoria and hopelessness following batter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 25-36.

Cohen, F. C. 1987. Measurement of coping. In Stress and Health, edited by S. V. Kasi & C. L. Cooper. 283-305. New York: Wiley.

De Ridder, D. 1997. What is wrong with coping assessment? Psychology Health, 12, 417-431.

Dutton, M. A., Hohnecker, L. C., Halle, P. M., & Burghardt, K. J. 1994. Traumatic responses among battered women who kill. Journal of Traumatic Stress, 7, 549-564.

Elo, S., & Kyngäs, H. 2008.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2(1), 107-115.

Flicker, S. M., Cerulli, C., Swogger, M. T., & Talbot, N. L. 2012. Depressive and posttraumatic symptoms among women seeking protection orders against intimate partners. Violence Against Women, 18, 420-436.

Fowler, D. N., & Hill, H. M. 2004. Social support and spirtuality as culturally relevant factors in coping among American women survivors of partner abuse. Violence Against Women, 10, 1267-1282.

Gondolf, E. W., & Fischer, E. R. 1988. Battered women as survivors. New York: Lexington Books.

Goodkind, J. R., Sullivan, C. M., & Bybee, D. I. 2004. A contextual analysis of battered women's safety planning. Violence Against Women, 9, 163-186.

Goodman, L., Dutton, M. A., Weinfurt, K., & Cook, S. 2003. The intimate partner violence strategies index. Violence Against Women, 10(5), 514-533.

Goodman, L., Dutton, M. A., Vankos, N., & Weinfurt, K. 2005. Women's resources and use of strategies a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reabuse over time. Violence Against Women, 11(3), 311-336.

Grigsby, N., & Hartman, B. 1997. The barriers model: An Integrated strategy for intervention with battered women. Psychotherapy, 31, 485-497.

Hsieh, H., &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1277-1288.

Iverson, K. M., Litwack, S. D., Pineless, S. L., Suvak, M. K., Vaughn, R. A., & Resick, P. A. 2013.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revictimiz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6(1), 102-110.

Jacobson, N. S., Gottman, J. M., Gortner, E., Berns, S., & Shortt, J. W. 1996. Psychological factors in the longitudinal course of battering. Violence Victims, 11, 371-392.

Kantor, G. K., & Straus, M. A. 1990. Response of victims and the police to assaults on wives. In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edited by M. A. Straus and R. J. Gelles. 473-487.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Kocot, T., & Goodman, L. 2003. The roles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battered women's mental health. Violence Against Women, 9, 323-346.

Krause, E. D., Kaltman, S., Goodman, L. A., & Dutton, M. A. 2008. Avoidant coping and PTSD symptom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exposur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 83-90.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rner, C. F., & Kennedy, L. T. 2000. Stay-leaving decision making in battered wom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215-232.

Lewis, C. S., Griffing, S., Chu, M., Jospitre, T., Sage, R. E., Madry, L., & Primm, B. J. 2006. Coping and violence exposure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domestic violence survivors. Violence Against Women, 12, 340-354.

Lilly, M. M., & Grahman-Bermann, S. A. 2010.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PTSD. Violence and Victims, 25, 604-616.

Mills, T. 1985. The assault on the self. Qualitative Sociology, 8, 103-123.

Mitchell, R. E., & Hodson, C. A. 1983.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1, 629-654.

Mitchell, R. E., & Hodson, C. A. 1986.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battered women. In Stress, Social Support, and Women, edited by Hobfoll, S. E. 153-169. New York: The Series in Clinical and Community Psychology.

Moos, R. H. 1995.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new measures of life stressors. European Journal Psychology Assessment, 11, 1-13.

Rusbult, C. E., & Martz, J. M. 1995. Remaining in an abusive relationship. Personal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558-571.

Strube, M. J. 1988. The decision to leave an abusive relationship. Psychological Bulletin, 104, 236-250.

Taft, C. T., Resick, P. A., Panuzio, J., Vogt, D. S., & Mechanic, M. B. 2007. Coping among victims of relationship abuse. Violence and Victims, 22, 408-418.

Waldrop, A. E., & Resick, P. A. 2004. Coping among adult femal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9(5), 291-302.

Walker, L. E. 1984. The Battered Women Syndrome, New York: Springer.

Yun, I, & Lee, J. 2014. Revisiting the effects of self-protective behaviors on the risk of injury in assaults against women. Violence and Victims, 29(1), 171-192.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정 현 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가정폭력과 관련한 각국의 입법동향은 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자의 민사적 보호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도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처리절차의 특례를 규정하였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에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었다. 이 두 법률은 1997년에 제정되어 다음 해부터 시행되어 20여 년 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많이 이루어 왔다.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만큼 손질이 잦은 경우가 드물 정도로 현장활동가들과 함께 입법계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간 보완된 대표적인 법제로 가정폭력처벌법의 격리·퇴거 임시조치 위반시 유치장·구치소 유치(2002), 긴급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2011), 피해자 신변안전조치의 신설(2014) 등,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 피해자 동반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2006), 임대주택 우선입주권부여(2009),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신설(2012), 퇴소시 자립지

원금 지급(2017),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연장(2018)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비롯한 대부분은 개정은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도적 보완을 하여도 아직 가정폭력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로 양 법률,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진 기본구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제도의 중복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절차의 흐름을 읽기 어려우며, 경찰, 검찰 및 법원의 단계별로 나누어지는 절차 속에서 각 업무가 분절되기 때문에 법집행자가 피해자보호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의 맥을 짚어가며 처리하기 어렵다.

그러다 가정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또다시 제도적 결함이 제기되고 현장대응의 문제점을 들며 왜 강력히 대처하지 못했는가라는 비난과 함께 강한 제재 위주의 법률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2019년 6월초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안 만해도 11개이다. 최근 입법안을 통해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제도는 가해자의 체포 혹은 의무체포의 도입이다. 현장가들 중에서도 의무체포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의 가정폭력관련 법제만 하더라도 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곳곳에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끌어들인다면 복잡한 법제를 더 복잡하게 얽히게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현재의 가정폭력 대응방식을 살펴보면서 의무체포제도를 포함한 법제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가정폭력의 실태와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현황

1.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은 2013년부터 112신고시스템에 별도의 폭력코드가 신설되어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신고건수는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 신고건수가 16만 정도에서 2017년에는 27만9천여 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검거인원도 5년 동안 3배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재범률은 2017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줄곧 감소추세이다.

이 통계만으로는 가정폭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늘어났는지, 반대로 가정폭력은 실제 감소함에도 신고의식의 향상으로 신고가 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고건수의 증가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공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범률의 확연한 감소추세는 적정한 개입의 결과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나쁘지 않은 상태이다.

[표1] 가정폭력 검거 및 재범률

구분	신고건수	검거인원(명)	검거건수(건)	동종재범인원	재범률
2011	-	7,272	6,848	2,395	32.9
2012	-	9,345	8,762	3,011	32.2
2013	160,272	18,000	16,785	2,131	11.80%
2014	227,608	18,666	17,557	2,072	11.10%
2015	227,630	47,543	40,828	2,336	4.91%
2016	264,567	53,511	45,619	2,023	3.78%
2017	279,082	45,206	38,489	2,775	6.14%

출처 : 경찰청 통계연보, 2014-2018, 생활안전국

*신고건수: 2013년부터 112신고시스템에 가정폭력코드가 신설됨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 실태조사에서는 2013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부부폭력률과 자녀학대율이 감소하였다. 2013년 부부폭력률과 비교하면, 2016년 조사에서는 3년 전에 비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모두에서 폭력 경험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 경험이 현저히 낮아진 경향을 보였다.[5] 이러한 경향은 자녀에 대한 학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폭력, 그 중

5)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6, 72-74면.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을 폭력유형별로 2013년과 비교해 보면, 신체적 폭력 경험은 2013년 4.9%에서 2016년 3.3%으로 1.6%p 감소하였으며, 정서적 폭력은 2013년 28.6%에서 10.5%로 18.1%p 감소, 경제적 폭력은 3.5%에서 2.4%로 1.1%p 감소, 성적 폭력은 4.3%에서 2.3%에서 2.0%p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정서적 폭력의 감소 수치가 반영되어, 2016년 여성의 폭력 피해율은 12.1%로, 3년 전 29.8%에 비해 17.7%p 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에서도 언어적 폭력이 급감한 것은 기존에 심한 신체적 폭력만을 폭력으로 여기던 사회적 인식에서 정서적 폭력도 폭력으로 인식하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된 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6)]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18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7)]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여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다소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이는 피해자가 경미한 신체적 폭력에도 민감하게 대처하여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경향으로 피해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의 감소 경향은 앞으로 더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이나 일단 고무적이라 판단되며, 폭력에 대한 감수성과 신고인식의 향상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가정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과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하는 가정폭력상담소의 현황, 가정폭력 피해자 숙식 등을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다.[8)]

[표 2] 지역별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현황

2018.6.30.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가정폭력 상담소 개소	207 (40)	37 (3)	11 (5)	5 (2)	8 (1)	9 (1)	6 (1)	4 (2)	40 (3)	11 (6)	6 (2)	12 (4)	7 (1)	10 (1)	22 (5)	14 -	4 (2)	1 (1)

※( )는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수

6)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6, 172면.

7) http://lawhome.or.kr/webbook/gapok_counselsta2018/index.html#page=1 2018년 상담위탁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 324명에 대한 조사

8) http://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stop

[표 3] 지역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현황

2018.6.30.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66	11	3	3	1	4	1	1	12	5	3	4	4	4	2	6	2

[표 4] 지역별 주거지원시설 공급 현황

2018.6.30.기준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임대주택(호)	314	10	40	30	18	20	22	28	24	10	11	20	10	10	10	42	9

여성가족부의 2019. 6. 5.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9년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위의 통계보다도 더 증설되었다고 한다. 즉 2017년 207개소에서 232개소로 확대하고(통합 10개소, 가정폭력 15개소 증가), 상담인력도 각 시설당 1명씩 더 충원한 총 232명을 증원하여(통합상담소 30명, 가정폭력 상담소 98명, 성폭력 상담소 104명) 여성폭력 피해자가 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9)]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피해자의 지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 인도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68%로 2/3 정도 차지하며, 수사·법적 지원도 12%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89 2019년 6월 5일 보도자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방문 최종배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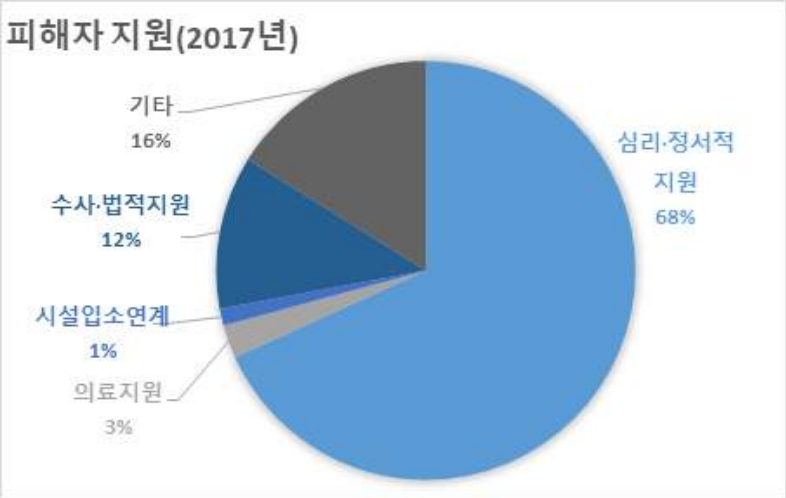

[표 5]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단위 :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피해자지원	피해자 계	건수	148,347	139,024	142,134	157,298	178,369	184,821	181,290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심리·정서적 지원	건수	99,590	96,025	95,754	107,073	123,845	124,206	123,646
		비중	67.1	69	67.4	68.1	69.4	67.2	68
	의료지원	건수	1,854	1,736	2,170	4,221	3,019	3,194	4,655
		비중	1.2	1	1.5	2.7	1.7	1.7	3
	시설입소 연계	건수	4,407	3,411	3,544	3,196	3,007	2,547	2,362
		비중	3	3	2.5	2	1.7	1.4	1
	수사·법적 지원	건수	26,191	18,599	21,483	20,262	21,188	21,996	21,427
		비중	17.7	13	15.1	12.9	11.9	11.9	12
	기타	건수	16,305	19,253	19,183	22,546	27,310	32,878	29,200
		비중	11	14	13.5	14.3	15.3	17.8	16
가해자지원	가해자 계	건수	56,975	53,426	51,586	63,344	64,680	78,646	80,052
		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선도면담 등	건수	56,357	52,785	50,702	62,505	63,645	77,354	78,462
		비중	98.9	99	98.3	98.7	98.4	98.4	98
	타기관 의뢰	건수	618	641	884	839	1,035	1,292	1,590
		비중	1.1	1	1.7	1.3	1.6	1.6	2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3.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피해자의 안전

가정폭력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피해자들의 신고의식이 향상되며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는 고무적이나, 구체적인 피해자 개개인이 맞닥뜨리는 현장에서는 공적 개입을 통한 지원과 보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도 그 단적인 예이다. 그 경우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였다는 것은 어쩌다 발생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안전보호망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우리 가정폭력 관련 법제에서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아직도 경찰의 초기대응은 소극적이고 피해자의 보호에 소홀하여 공적 개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많이 호소하고 있다.

김정혜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피해자면접조사의 예를 들면, 경찰은 가해자에게는 경고조차 하지 않고 피해자만 분리하였다.[10]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을 때 남편으로부터 협박, 신체적 폭력, 상해 등의 피해로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도 산발하고 등에 피를 흘리는 상태였는데 경찰은 '크게 심각하게 안 보고' 면접참여자에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라고 한 뒤 진술을 청취하고, 면접참여자가 무섭다고 하니 경찰이 1366에 가겠냐고 물어보았고, 가겠다고 하자 경찰이 면접참여자만 데리고 나왔고 경찰차 안에서 고소할 것인지 질문하였으며, 경찰은 남편에게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또 다른 면접참여자는 경찰에게 남편을 퇴거시켜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어렵다고만 하였다.[11]

---

10) 김정혜, 윤덕경, 정수연, 이인선, 이주영,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1-132면.

11) 김정혜, 윤덕경, 정수연, 이인선, 이주영, 위의 글(각주 5), 137-138면.

"맞은 나는 밖에서 이렇게 갈 데도 없는데 왜 내가 집에 못들어가냐, 저 사람을 나오게 해줘라. 차라리 저 사람한테 찜질방 가서 자라고 해라. 난 집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그 법으로 안 된대요. 강제로 … 그것 또 법적으로 뭐를 신청해야 되고, 뭐 조치가 있어야 되고, 아니 그 당시, 그… 상황에서, 며칠 걸린다. 지금 당장은 못해준다. 당장 나는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집에를 못들어간다는 거죠."

이 면접참여자는 신고할 때마다 매번 자신이 찜질방 등에서 하루 자고 돌아오는 식으로 피했다고 한다.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응답을 보면, 일반인들은 경찰이 신속히 대응해주고 가해자에게 따끔하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많이 원하여 공적 개입을 잘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표 6]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응답)

정책별(1)	2016		
	전체 (%)	여성 (%)	남성 (%)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43.3	42.6	44.1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	36.9	35.8	38.0
접근이 쉬운 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31.6	30.3	33.1
양성평등 의식교육	25.6	25.6	25.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	35.5	34.6	36.5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공	24.4	25.2	23.6
경찰의 신속한 수사	37.3	39.7	34.9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44.4	45.2	43.6
상담, 교육 등 가해자의 교정치료프로그램 제공	19.4	19.7	19.2
기타	0.2	0.2	0.1

출처 : 여성가족부, 2016 가정폭력실태조사

반면 경찰은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일반사건보다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가정폭력 대응에서 어려운 점은 '피해자가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55.8%), '다른 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은 경찰이 적극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불충분한 편이다'(34.4%), '적극 개입했다가 가족이 해체되거나 폭력이 오히려 심해질까 우려된다'(29.8%), '신체적 폭력은 없고 정서적 언어적 폭력만 있는 경우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25.%)고 한다.[12)]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경찰이 다른 사건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우는 경찰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넘는 동안 거의 매년 두 가지 관련 법률들을 손질하여 왔음에도 제도적 미비점은 아직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4.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1997년에 제정된 후 2019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각각 23차, 22차 개정을 하면서 타법개정을 제외한 주요한 일부개정은 각각 9회, 14회로 거의 2-3년 마다 있을 정도로 개정을 통한 법제개선이 꾸준히 되어 왔다.

올해 2019년 들어와서 6월초까지 발의된 의원입법안 만해도 11개이며, 2018년에는 15개가 발의되었다. 2018년 이래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나타난 주된 관심사를 보면, 가정폭력방지법의 경우에는 재발우려 폭력행위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도입, 보호비용지원 확대이며,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에는 응급조치에서 체포제도 도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체포제도의 도입방안은 작년 말 강서구에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이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체포제도 도입으로 초기대응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현행 가정폭력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체포제도의 도입여부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

12) 김정혜, 윤덕경, 정수연, 이인선, 이주영, 위의 글(각주 5), 81면.

[표7] 가정폭력 관련법률 주요 개정안 (2018.1.1.-2019.6.7.)

구분	발의연월일, 발의자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정폭력처벌법	2019.6.7.(의안번호 2020873)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보관하도록 함
	2019.6.7.(의안번호 2020869)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 사법경찰이 신고현장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하고자 함
	2019.5.29.(의안번호 2020676)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재발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유치장 유치 처분**
	2019.5.3.(의안번호 20182)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 접근금지는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현재 위치로부터의 일정거리를 포함하도록 함
	2019.5.2.(의안번호 20157)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2019.3.25.(의안번호 19371)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 접근금지 등의 임시처분은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까지 연장, 의료기관 위탁이나 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처분은 그 연장을 두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
	2019.3.18.(의안번호 1926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현재의 과태료 처분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 기함
	2019.3.15.(의안번호 19235)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규정 신설**
	2019.3.6.(의안번호 18986)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도입** • 긴급임시조치에 **유치장·구치소 유치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2018.12.31.(의안번호 17928)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
	2018.12.12.(의안번호 17522)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
	2018.4.23.(의안번호 2013186)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
가정폭력방지법	2019.5.3.(의안번호 20181)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경찰관서의 장은 재발 우려 가정의 가정폭력행위자 및 혐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018.3.22.(의안번호 2012603)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 실태조사에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양육비 수급에 관한 사항 포함
	2018.3.16.(의안번호 2012498)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고용안정 현황에 관한 사항 포함
	2018.2.28.(의안번호 2012230)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018.1.5.(의안번호 2011290)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Ⅲ.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대응법제의 개선방안

1.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현장·출입조사

가. 경찰의 현장출입·조사의 내용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 현장이나 사건 조사와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할 수 없고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방지법 제9조의4 제2항, 제3항).

a. 가해자가 현장출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규정에 의하면 가해자의 동의 없이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b. 수색의 권한까지 인정되는가?

이 규정에 의하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데 한정된다. 다만 범죄현장에서 압수·수색, 체포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의 근거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c.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경찰은 문을 부수고 출입할 수 있는가?

규정상 경찰은 현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잠긴 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정도의 물리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출입을 거절하는 경우 경찰관이 몸으로 밀치고 나아가는 방법으로 “반의사출입”을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13]

나. 피해자보호의 한계

경찰에게 현장출입·조사의 권한이 부여되었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는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가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단순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정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사유도 되지 않으므로 출입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방실 내에서 비명이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등

---

13) 박병욱, 가정폭력·아동학대 경찰대응 법제 개선방안 – 긴급임시조치로서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제16권 제1호(2018), 107면.

일정한 구체적 위험의 사실적 근거가 발견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긴급출입(강제출입)이 가능할 것이다.[14] 다만 현실적으로 경찰들은 영장 없이 강제출입을 하는 경우 형사법상의 영장주의 위반의 문제로 피소될 우려가 있어 주저할 것이며, 이런 한계선상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방치될 여지는 있다.

다. 개정의 필요?

그렇다면 이 규정에 시설물 훼손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현재 의원입법안으로 "사법경찰이 출입으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15]

생각건대 이런 규정은 경찰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갈 근거를 주어 권한을 강화해주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실행의 한계를 남길 것이다. 경찰이 시설물훼손에 대해 형사책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그것은 형사책임에 휘말릴 여지를 전제한 것이며 그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긴급한 경우 행하는 어떠한 시설물훼손에 대해 경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면, 지나친 권한 확대를 인정하는 점에서 법리적 비판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개정안은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보인다.

개정안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구호하기 위한 경찰의 직무수행은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에 의해 책임의 감경·면제가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일반적 정당화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경찰권 보장을 위해 각 범죄마다 세부적인 면책규정을 둘 수 없으며, 두더라도 또 다른 한계가 생긴다. 일반적 경찰 행정권을 명시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의 경찰의 위험방지를 위

---

14) 박병욱, 위의 글(각주 8), 108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5)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6.7.발의, 의안번호 2020869.

한 출입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여 실행하리라고 신뢰함이 족하다.

2.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응급조치

경찰이 출동하면 가장 먼저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초등수사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가 피해자보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응급조치로,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하거나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응급초치 내용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이다.

가. 피해자보호에 반하는 피해자 분리의 문제

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가 가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내보내어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안전하게 해 주는 일이다. 그런데 법에서는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라고만 규정하여 격리당해야 할 대상을 가해자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가해자가 분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분리시키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마저 보호시설 인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 및 분리시킬 수 없다는 한계에 이른다.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분리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 때린 자는 집에 거하고 맞은 자로 하여금 도피케 하는 것은 경찰마저 폭군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군림하게 해주는 형색이 된다. 사회에서 타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범하였다면 마땅히 응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로 하여금 당당하게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주는 것이 가정폭력특례법이 아니다. 관계폭력 속에서 취약하게 당하기 쉬운 피해자에게 최선의 안전을 확보해 주려고 특례절차를 만들었는데, 가해자가 받는 반사적 이익에 비하여 피해자는 공적개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의 확보는커녕 집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주

객이 전도된 코믹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응급조치방식은 피해자 보호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통한 가해자격리?

1) 가해자의 격리를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가해자의 강제격리가 어려운 현행 응급조치의 결함을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가능한 현행범 체포나[16] 긴급체포[17]를 통하여 가해자를 폭행현장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18] 의원입법안으로도 가정폭력처벌법에 응급조치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도입하는 개정안이나 체포규정을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나와 있다.[19] 이 법안들의 경우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등 체포제도를 응급조치로 도입

---

16)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현행범(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이면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준현행범에 대하여도 영장 없는 체포가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현행범 체포의 요건은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 경미사건, 즉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17)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이러한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2항).

18) 한인섭, 가정폭력범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7호, 1999, 126면;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 139면.

19)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3.15.발의, 의안번호 19235,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규정을 신설.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3.6.발의, 의안번호 18986,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도입.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2018.12.31.발의, 의안번호 17928,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할 수 있는 특례 마련.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8.12.12.발의, 의안번호 17522,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

하자고만 하고 특별한 요건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 강제처분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체포제도를 창설하자는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현행 사법제도를 혼란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제도를 가정폭력처벌법에 응급조치로 규정하자는 의미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2) 검토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활용한다면 경찰관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신병을 최대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그 시간만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언제나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현행범 체포도 어려운 점이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설혹 체포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응급조치단계에서 사법처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응급조치는 사법조치가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재발방지, 즉 범죄예방을 위해 내려지는 행정작용이다. 체포를 통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분리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는 형사절차상 수사의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상 강제처분이지 단순히 재범방지를 막기 위한 범죄예방작용이 아니다. 따라서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제격리가 필요하다면 사법처분보다는 경찰행정처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정폭력특례법의 취지에 상응할 것이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는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체포 혹은 긴급체포로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응급조치의 격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되지 않으며, 응급조치 단계에서 경찰권 행사로 가해자를 강제 격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 의무체포제도의 도입?

1) 의무체포를 응급조치에 도입하는 방안

현행법제에서는 경찰이 초기대응을 강력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응급조치 유형으로 의무체포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가해자를 먼저 체포하여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자는 방안이나 영장 없이 가정폭력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자는 방안 등이 주장되고 있다.[20]

가) 찬성하는 입장

가정폭력의 경우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킬 필요성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중요하므로 최소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살피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는 가정폭력 사안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경찰의 판단하에 가해자의 체포는 가능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경찰 내부 규정을 통해서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21]

나) 반대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체포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확립에는

---

20)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4.23.발의. 의안번호 2013186,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임.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6. 7. 발의, 의안번호 2020873,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예정하여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자는 내용임. 이는 현행범체포로 인해 피해자도 현행범으로 같이 체포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더라도 의무체포제도는 피해자에게도 폐단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한인섭, 위의 글(각주 13), 125면; 정도희,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대응과 경찰개입,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2018), 332면.

기여할 수 있겠으나, 다른 범죄와 달리 비단 가정폭력에만 체포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22] 그리고 경찰이 현장출입조사, 긴급임시조치 등을 충실히 한다면 구태여 의무적 체포를 동원할 여지가 현저히 줄 것이며, 이미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체포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한다.[23]

다) 검토

응급조치는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작용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조치로서 명시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체포제도를 응급조치로 도입하자는 방안은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만큼 가해자를 격리하면 되므로 반드시 신체자유까지 박탈하고 48시간까지 구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응급조치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일상생활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응급조치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대신에 폭력에 책임 있는 가해자가 원칙적으로 주거를 떠나도록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체류금지 및 접근금지'의 내용이 포함된 처분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가해자가 경찰의 명령을 거역하는 경우에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유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현행법에서 임시조치위반에 대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경찰의 처분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처럼 경찰에게 유치권한을 주되, 필요한 시간의 범위에서만 유치하고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간을 연장이 필요하다면 법원에 허가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피해자만 분리한다면 그러한 공적 개입은 적절하지도 않고 정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경찰로

22)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경찰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3, 44면.

23) 최병각,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과 그 한계,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4, 98면.

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원요청을 포기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가정폭력의 대응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가해자가 축출되어야 하며, 그러는 것이 가해자에 공적 개입의 위엄을 각인시켜 자신의 폭력적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회오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며 가정의 폭군은 더 이상 가정에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3.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긴급임시조치

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내용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제2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즉 ①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100m 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취하는 것이다(처벌법 제8조의2 제1항).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직권으로 바로 취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현행 응급조치에 의하면 가해자 피해자 분리라고 하여 가해자를 강제로 격리 시킬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응급조치단계에서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하여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시키면 될 것이라는 제안도 있다. 가해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없는 부실한 응급조치 대신하여 긴급임시조치를 발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긴급임시조치 자체의 요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긴급임시조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보충적 제도이다. 임시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내리는 사법처분이고, 법원이 내려야 하는 임시조치를 긴급한 때 한하여 경찰이 먼저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는 사법처분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긴급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제도를 응급조치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임시조치를 항시 대체적인 제도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응급조치제도는 긴급임시조치와 별개로 명

실공히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자체의 문제점이 먼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나. 현행법상 긴급임시조치 규정방식의 문제

긴급임시조치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그 실질적인 성격만을 고려해본다면 가해자로부터 기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처분은 '경찰행정청의 하명'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정폭력처벌법을 살펴보면 긴급임시조치는 경찰처분이 아니라 사법처분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응급조치와 마찬가지로 긴급임시조치가 경찰에 의한 구체적 위험방지 임무수행이라는 실질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규정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예방을 바로 취하는 경찰행정작용이 아니므로 결국 경찰의 권한이나 책임으로 귀속되는 활동이 아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를 거쳐 판사가 결정해야 조치는 비로소 정식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처벌법 제8조의3). 만약 긴급임시처분을 하더라도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무효인 조치가 된다. 물론 청구를 하면 거의 받아들여지겠지만 후속의 절차가 검사와 법원의 손에 달려있는 긴급임시조치는 현행 요건에 따라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을 상황에서만 내릴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현행 법제에 따라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바로 즉시강제나 직접강제를 허용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긴급임시조치제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가정폭력의 대응 법제는 검사가 개입하는 형사절차 방식으로 디자인 되어 가해자제재에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지 않고 가정폭력 대응의 효과가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이상하다.

다. 개선안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이 아니라 목전에 임박한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발하는 경찰하명의 한 유형으로서 경찰고유의 사무로 볼 수 있기에 초동조치 단계에서 검사 경유를 배제하고 바로 판사 결정 단계에서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24] 가정폭력에 즉시 대응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임시조치를 경찰처분으로 명확히 바로 잡아야 한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위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위험방지 작용에 관할권이 없는 검사가 사법처분의 형식으로 관여함으로써, 경찰 긴급임시조치 후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제적 난맥상을 가중시키는데 있다. 검사의 개입으로 경찰처분 형식으로 긴급임시조치가 정립되지 못하다 보니 행정상의 즉시강제, 직접강제,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법적 제재 등의 논의가 법제적으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25]

독일의 경우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를 행정법으로서의 경찰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목전에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황이라면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명령을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고, 이미 부과된 해당 경찰하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찰수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위반이 있는 경우 독일경찰은 경찰법에 따라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로서의 행정법상의 구금도 할 수 있다.[26]

긴급임시조치를 경찰처분의 형식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로부터의 100m 이내 접근금지' 하명시, 상황이 급박한 경우라면 행정상 즉시강제의 방식으로, 그 하명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몇 시간 뒤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발견하는 경우라면 직접강제의 방식으로 그 집행이 담보될 수 있는 상태

---

24) 김상운, 가정폭력특례법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찰 단계에서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4권 3호(2012). 18면.

25) 성홍재,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검사의 지휘권에 대한 법적 검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1, 3면 이하; 박병욱, 위의 글(각주 8), 121면.

26) 박병욱, 위의 글(각주 8), 120-121면.

가 되어야 한다.

긴급임시조치가 위반된 때에 현행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부과는 절차상 8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가능하게 되므로 그러한 재산적 제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라는 목적 실현과는 매우 동떨어진 조치이다. 가해자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피해자보호에 대한 적신호를 의미하므로 즉각적인 조치를 발동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해자의 유치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명할 때 위반시 유치할 것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위반을 최대한 막으며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피해자보호 관점에서 본 검사의 가정폭력 대응조치

가.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처벌법 제8조제1항).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대체로 현장을 접한 경찰의 신청에 따라 하게 될 것이다. 임시조치는 검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조치인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법제가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1)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임시조치는 가해자에 부과된 형사제재가 아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시조치도 긴급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행정작용이라는 조치의 본질과 달리 사법처분의 형식으로 법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정폭력 대응에 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27]

---

27) 김재민,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체계의 개선방향,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51면 참조; 이성용,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관한 고찰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1호, 2007, 303면 참조

검사는 수사절차, 공판절차,재판집행절차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주된 업무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등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경우도 범죄수사와 관련해서 가능하고, 범죄수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모든 경찰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개선안

수사를 위해 검사는 당연히 개입을 해야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이나 퇴거명령은 이러한 제2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아직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 긴급임시조치를 경찰행정작용으로 본다면 검사의 지휘를 받을 영역이 아니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도 형사제재가 아니므로 검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다. 법제정 당시에는 임시조치만 두었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판단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없자 긴급임시조치를 다시 신설하여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등특례법에서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 청구를 하도록 검찰의 권한을 넣은 것은 이 법제의 성격을 벗어난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내리는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을 보더라도 검찰이 중간에 개입하여 청구해주는 나라는 없다. 예방적 경찰활동의 영역으로 경찰과 법원이 직접 통로가 되어 해결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검찰이라는 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는 검찰의 권한 배제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성격상 경찰과 법원의 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에 검사를 개입시켰기 때문에 형사절차화 시키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만들어 경찰행정권의 발동을 무력화 시켜 가해자에 대한 즉시의 강제적 처분이 되지 않고 피해자보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수사경찰이 반드시 관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경찰’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나. 검사의 보호사건 송치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

검사선의주의를 취함으로써 기소하든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든, 처리기간이 너무 길어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중 상당수가 사건의 즉시성을 상실하게 되며 그 사이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개선안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일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처럼 검사로 하여금 중심적 지위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이 가정폭력사건을 다루면서 형사사건으로 적합한 경우만 검찰로 보내는 방식이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이다. 가정폭력의 처리는 검찰 위주가 아니라 경찰과 법원의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가정폭력의 특성에 부합하다. 국제적인 경향도 법원 중심의 민사적 보호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호사건으로 다루면서 피해자보호 위주의 민사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확보에 관한 권리를 강화하고자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2011년 7월 25일 15차 개정안에 의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한 접촉 금지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가해자의 2차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내용이 비슷한 형식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권을 동시에 규율하여 양자가 중복되는 것 같지만 두 제도는 각각 의미가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가 이중으

로 설정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쉽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 설령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까지는 몇 일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의 폭력, 협박 등 각종 위해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 경찰이 가해자를 상대로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현행법상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가 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도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양육비지급, 주거인도, 기타 경제적 지원 등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 자체의 내용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과 별도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강력히 담보되고 위반시에도 유치 등의 강제처분이 가능할 때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Ⅳ.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1. 때린 사람이 나가야 한다.

부부, 가족, 파트너관계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더 이상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다. 사회적 공간에 놓여있는 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다양한 영역에서 힘을 합해야 하며, “때린 사람이 나가야 한다(Wer schlägt, muß gehen)”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피해자에게 도피를 청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언제나 추방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피해자가 또 다시 새로운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활동가들, 경찰, 가정법원이 함께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28]

효과적인 법적 개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가해자를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간적으로 즉시 격리시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이고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

28) Gewaltschutzgesetz – Hausliche Gewalt beenden mit Recht. Information zum Bundesgesetz über den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Wegweisung, Kontaktverbot, Wohnungszuweisung, S. 7.

2. 효율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행정조치로서의 경찰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현행 법제에서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가 피해자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개입부터 가해자에 대한 강제적 격리조치 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의 확립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접근금지, 전기통신 등 접근금지 조치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엄격히 이행되도록 법제를 갖추어야 한다.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신청의 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법원에 다시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가 아니라 가해자제재에 초점을 둔 법제처럼 검사가 개입하여 절차지연과 피해자안전에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들을 통합하여 경찰이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해자를 퇴거시키고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3. 의무체포 등 체포제도의 도입은 현장에서 경찰의 명령권이 확보된다면 불필요하다.

가정폭력에서 가해자의 격리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므로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자는 주장들이 있다. 그런데 체포는 강제처분으로 영장주의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서만 예외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가정폭력처벌법에 규정하여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구체적인 가정폭력사안이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의무체포제도를 응급조치로 도입하자는 방안도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급조치 수단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만큼 가해자를 격리하면 되므로 반드시 신체자유까지 박탈하고 48시간까지 구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행정작용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 체류금지 및 접근금지'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권한을 부여한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킨다면 굳이 강제수사 방법인 체포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를 격리하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

4. 경찰과 법원 간의 직접적인 위기개입 채널을 마련하는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폭력 관련법제는 법률의 이원화에서 시작하여 처벌과 예방,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등의 이원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통합되지 않은 채 적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 우리의 가정폭력 대응은 주로 형사법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는 가정폭력의 대처에는 잘 맞지 않다.

우리 가정폭력의 법적 개입절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형사사법기관위주, 특히 검찰 위주로 소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원적인 절차구조 하에서 가정폭력을 형사절차로 다룰 때는 그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반폭력 범죄와 동일시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선진 각국의 가정폭력 개입과정은 피해자 안전과 향상된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 구축에 초점을 두고 경찰과 법원 간에 직접적인 위기개입 채널이 제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29]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복잡한 구조에서 반복될 수 있는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형사절차로 다루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가정폭력처리를 위한 특례라는 특별법을 마련하였는데 우리 법제는 어이 없이 형사처분적 속성을 그대로 다시 반영하는 우를 범하여 처음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정폭력은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기는 범죄이기에, 범죄자의 처벌이나 징벌 여부를 가리기 전에 먼저 공동체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소멸시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폭력을 일으킨 가해자를 공동체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가정폭력특례법은 행정조치로서의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의 강화가 필요하고 검사의 지휘는 여기서는 불필요하다. 사법처분의 성격이 아니므로 검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경찰과 법원 간의 직접적인 위기개입 형식으로 제

---

29) 김은경, 소송과정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현황과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2006, 284면.

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검사선의주의나 기소단계의 다이버젼, 검사의 처분청구 등의 규정은 이원적 제재구조의 골격으로 가정폭력의 효율적 대응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굳이 특례법에 둘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여 보호처분에 관한 특례법으로 단일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처리절차는 일반형사절차와 달라야 하므로 가정폭력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이라는 특수성에 따른 경찰의 초기대응에서부터 민사적 분쟁까지 한 재판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피해자보호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제도를 가정폭력 대응방안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임시조치 내지 보호명령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효과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적인 감독방안으로 전자감독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접근금지를 조치하면서 처음부터 준수사항으로 전자발찌를 부과할 수 있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 제재수단으로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독일과 스위스에서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선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등 강력범에게 형집행종료 후에 부과하는 보안처분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사실 서구의 전자감독제도의 발전을 보면 가택구금과 같은 사회내처우를 위한 수단 혹은 보호명령 등 준수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수용되었었다. 우리에게는 형집행종료 후 제재인 보안처분으로서 전자감독이 익숙하지만, 접근금지를 감시하는데 전자감독은 어쩌면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8] 가정폭력범죄 처리절차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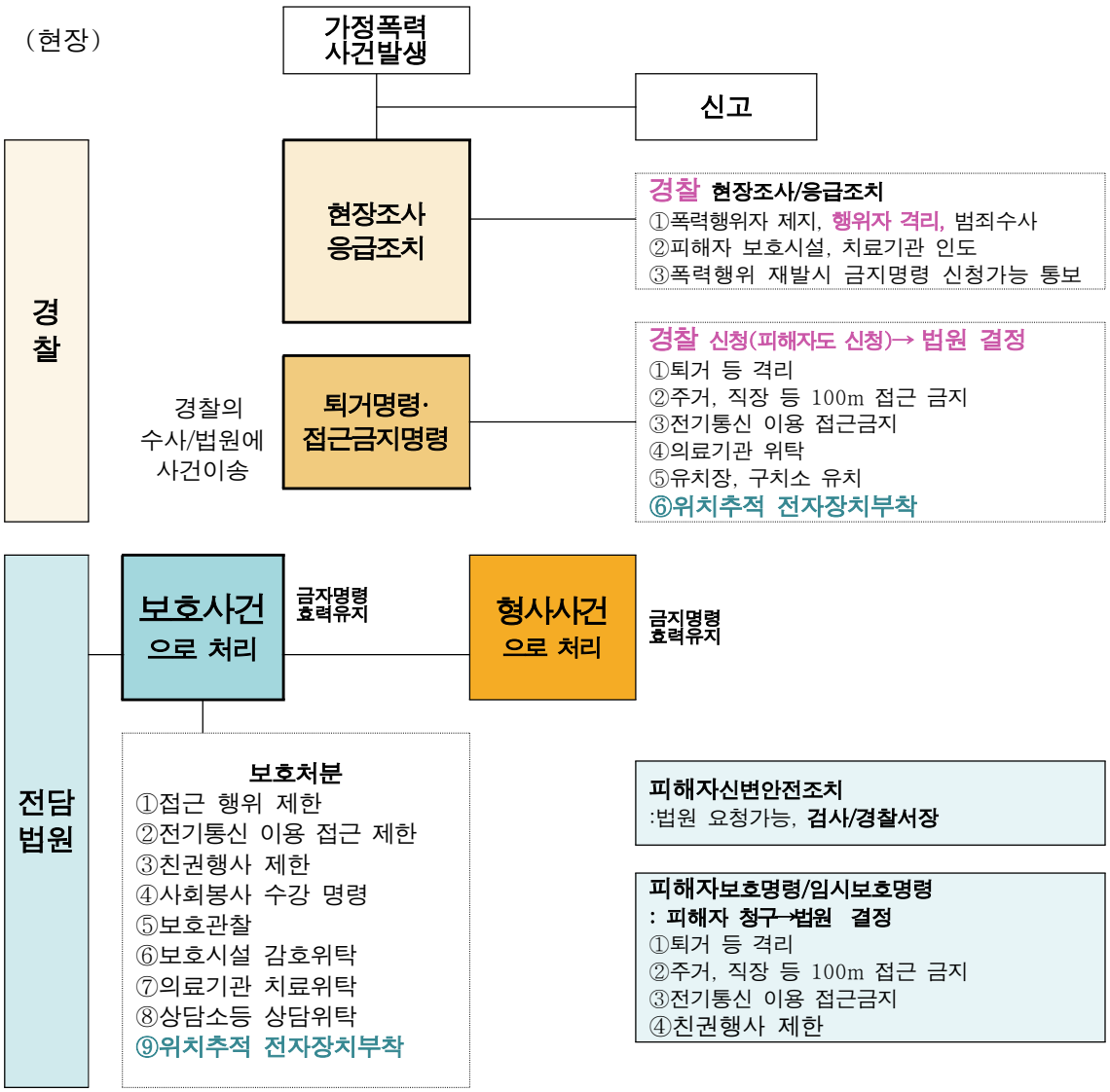

[부록]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의 주요 개정 연혁

년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정 1997. 12. 31. 시행 1998. 7. 1. 법무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997. 12. 31. 시행 1998. 7. 1. 여성가족부
2018		제22차 일부개정 2018. 3. 27 •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함**
2017	제23차 일부개정 2017. 10. 31. • 제4조제3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로 수정	제20차 일부개정 2017. 12. 12. • **제1조의2(기본이념) 신설** –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제5조 제3항 신설 – ③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의5 제1항에 제4호의2 신설 –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급**
2016		제19차 일부개정 2016. 3. 2. •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거나 시설의 중단·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
2015		제18차 일부개정 2015. 6. 22. • 국가 등의 책무에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 체계 구축을 추가함(제4조제1항제7호 신설). •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의 임시 보호 기능을 추가함(제4조의6제1항제4호 신설). •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신설**(제4조의7 신설). •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함(제8조제3항 삭제).
2014	제19차 일부개정 2014.12.30. • 가정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 추가(제2조제3호마목) • **피해자신변안전조치 신설(제4조제2항제8호)** • 긴급임시조치불이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제66조) 제18차 일부개정 2014.1.28. •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제정에 따라 그 법을 우선 적용하게 함	제16차 일부개정 2014. 1. 21. •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3제2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조의3제5항 및 제8항 신설).
2013		제15차 일부개정 2013. 7. 30. •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제6호 신설, 제9조의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4조의3). • 상담소의 업무에 신고자 · 상담요청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업무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함(제6조제1호의2 신설, 안 제6조제5호). • **보호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직업훈련비를 추가**함(제7조의5제1항제4호 신설). •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함(제9조의4). • **가정폭력 행위자가 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제1항 신설). 제14차 일부개정 2013. 5. 28.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실시** • 가정폭력의 위해성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 편성 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의 채널별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012	제17차 일부개정 2012.1.17. • 성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받을 수 있게 함 • 보호처분 상습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상습미이행자: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 신설 •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추가-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제12차 일부개정 2012. 2. 1.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 신설 : 제9조의4** 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1	제14차 일부개정 2011.7.25. • **긴급임시조치 신설(제8조의2, 제8조의3)** •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위반시 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 • 임시조치 중 격리·접근금지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신설	
2010		제11차 일부개정 2010. 5. 17.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제4조의3제2항 신설).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제9조의2 신설). • 가정폭력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제9조의3 신설).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제13조의2 신설). 제10차 일부개정 2010. 2. 4.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제7조의5)
2009		제8차 일부개정 2009. 5. 8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부여** •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
2007	제11차 일부개정 2007.8.3. • 피해자의 임시조치 신청 청구 요청권 신설(제8조제1항·제3항·제4항) •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에서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선행요건 삭제 •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신설(제9조의2)** • 보호관찰소장에 대한 판사의 조사요구권 신설(제21조) • 임시조치·보호처분에 전기통신 등 이용 접근금지 추가 • 임시처분·보호처분 기간 연장(제29조제5항, 제41조) • 피해자의 임시조치결정 변경 신청권 신설(제29조의2) • 소환불응자·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불이행시 과태료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제10차 일부개정 2007.5.17. • 당사자의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민사소송법의 소송기록의 공개를 이 법의 준용대항에서 제외	제5차 일부개정 2007. 4. 11. •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
2006		제4차 일부개정 2006. 4. 28. • 가정폭력 실태조사(제4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함. •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제4조의3 신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제4조의4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2005	제7차 일부개정 2005.1.27.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해당 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취소·불처벌의사표시 있어도 보호처분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두고 불이행시 과태료로 처벌	
2004		제2차 일부개정 2004. 1. 20. • 종전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관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로 이관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중에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등에는 구상권 행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002	제6차 일부개정 2002.12.18. • **법의 목적에 피해자와 가족구성원 인권보호를 추가(제1조)** • **격리·퇴거 임시조치 위반시 경찰관서 유치장·구치소에 유치(제6조제2항)** •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심리결과 불처분·보호처분취소: 검사의 송치사건이면 대응검찰청검사에게 송치, 법원의 송치사건이면 송치법원에 이송(제37조제2항, 제46조) • 보호처분 변경·취소·종료시 항고 신청에 검사 추가	
1999	제1차 일부개정 1999.1.21. • 교육기관종사자와 그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아동의 전학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함	
1997	1998.7.1.시행 1997.12.31.제정	1998.7.1.시행 1997.12.31.제정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에 대한 토론문

정 윤 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오늘 두 발표자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응은 어떤 과정이고 공적 도움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피해자의 공적 도움요청에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훌륭한 발표를 해주시고 가정폭력 연구와 임상에 많은 시사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토론을 통해서 피해자의 실제적인 욕구 및 행위자 상담의 효과성과 피해자들이 공적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 접근성을 검토해보고 법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공적 도움에서의 피해자 욕구에 맞춘 개입과 행위자 변화 요인 연구를 통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1) 피해자의 욕구 파악과 적극적인 피해자 상담

장희숙교수님의 발표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공적 도움을 요청하기까지의 대처

노력과 시도, 공적 도움에 연결된 후의 변화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경험한 도움요인으로 공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강제 처분과 상담을 통한 부부관계 개선 및 심리적 지원입니다. 피해자들이 공적 지원을 받은 후에 도움이 된다고 한 요인들과 일반인의 가정폭력 감소 정책 의견과 비교해보면,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반 응답자들은 폭력문화 개선, 지원서비스 홍보, 가해자 가중처벌, 예방교육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실제 피해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30] 가정폭력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당장의 욕구는 사회에 만연한 가정폭력 예방이 아닌 배우자의 폭력 중단과 재폭력 방지이며 계속되는 일상의 삶에서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가 개선되어 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가 중요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의 경험과 욕구에 기반하여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피해자 심층 연구는 매우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 도움을 실제 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례가 흔하지 않을뿐더러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가 보호처분으로 상담에 의뢰된 경우에도 피해자는 상담 의무가 없으므로 선뜻 상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입은 처분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서비스라는 인식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피해자가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재폭력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재폭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피해 이후의 개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효과는 더 알려져야하고 상담에 대한 접근은 더 용이해져야 합니다.

피해자 상담에서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이슈의 하나는 부부상담일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상담자들은 피해자들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가해자 상담과 부부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상담이 부부관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상담을 적용하거나 제한

30) 여성가족부. 2016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요약 6쪽)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 개선'이 24.9%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서비스 홍보' 15.5%, '가중 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13.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실시' 12.2% 순으로 나타남.

하는 기준에 대해 정해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와 국내의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 부부상담을 권고하기도 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행위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부부상담을 권유하여 부부상담, 부부집단상담, 부부캠프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부상담이 행여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과 비난이 돌아가지 않는지,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부부상담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고, 이 기준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상담을 무조건 금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개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하고 부부 모두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부부상담이 관계 개선과 재폭력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부부상담을 실시하기 전에 부부가 한자리에서 같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당사자들에게 부부상담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에 부부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할 때에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도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부부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상담의 허, 불허를 논하기보다 국내외 여러 제언들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문화에 맞게 구체적인 부부상담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부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행위자 보호처분의 효과성과 변화 요인 연구

저는 행위자 상담과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행위자들이 정말 상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의도가 폭력행동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공격성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지, 인식 자체가 양성평등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 것을 “변한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저변에는 행위자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홍보가 거의 없고, 그런 결과를 접한다 해도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일부의 결과로 치부하거나 불신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에는 정부의 예산이 쓰이므로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법 개정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행위자 프로그램 혹은 상담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대부분의 상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효과성도 유의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항목이나 평가도구, 평가방법은 일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박소현(2013)[31]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담 위탁된 행위자들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 폭력허용도, 폭력재발여부 등에 대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서 모든 측정 영역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 양혜경 등(2015)[32]의 행위자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폭력, 분노, 의사소통, 자아인식, 폭력재발여부 등을 사전-사후 검사로 평가하였을 때 부부갈등과 의사소통, 자아인식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구자나 상담소에 따라 다른 항목과 척도를 사용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희숙과 조현각(2013)[33]이 89개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보면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87%로 거의 대부분의 상담소가 효과성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효과성을 평가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평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평가도구의 부재(70%)를 들어서 일부 상담소에서는 적절한 평가도구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효과성 평가 결과들이 상담소 외부의 신뢰를 얻고 법 개정의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조사 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하며 평가항목, 도구, 방법 등이 일관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행위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고 평가 시기도 통제하여 장기적 효과까지 검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

31) 박소현(2013).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제도와 효과성. 이화젠더법학, 5(2), 109-153.

32) 양혜경, 유해선, 서보람(2015).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정연구, 68. 39-66.

33) 장희숙, 조현각(2013).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과제. 교정담론. 7(1),191-214.

그 예로서 201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행위자 상담 처분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실시한 추가조사 결과[34]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자의 폭력재발 방지 요인은 공권력 개입의 효과가 33.6%,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 25.4%, 배우자에 대한 이해력 증진이 23.1%로 나타나 법적 처벌 자체의 효과와 더불어 상담개입을 통해 폭력인식의 변화와 부부관계 개선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 피해자의 공적 도움 접근성에 대해 초기대응을 하는 경찰의 공권력 강화와 가정폭력 신고시 사례관리 시스템의 작동을 제안합니다.

1) 경찰의 초기대응 공권력 강화

가정폭력실태조사(2016)[35]에 따르면 일반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가정에서 부부폭력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1%가 신고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부부폭력이 발생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도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는 1.7%, 그 밖에 가정폭력 기관은 1.2%로 일반인들이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에 대한 생각과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처와는 간극이 매우 큽니다. 즉,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폭력은 발생 초기에서부터 경찰의 신고와 함께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에는 고려할 것들이 많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감당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장희숙교수님이 조사한 피해자 면접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는 침묵하고 참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폭력이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는 단계에서는 맞대응으로 폭력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흡하면 피해자는 더 심한 재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0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36]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경찰 신고후 행위자의 폭력행동 변화

---

34)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18). 가정폭력상담 효과성 조사연구 결과.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35) 여성가족부. 2016 가정폭력실태조사. 151쪽, 103쪽.

에 대한 조사 결과는 경찰 신고후 행위자의 폭력이 이전보다 더 늘었다는 응답이 33%, 신체폭력이 줄었으나 다른 폭력(언어, 정서)이 늘었다는 응답이 22%로, 신고 후 폭력이 줄거나 중단되었다는 응답 18%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였더라도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제재 효과가 매우 적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재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 조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현미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찰의 초기대응에 대한 공권력 강화 제안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 개정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2) 가정폭력 피해 신고와 함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사례관리 시스템 작동

지난 20여년간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특별법을 부단히 개정해왔음에도 정작 피해자가 느끼는 안전감이나 일선 경찰이 느끼는 초기 대응체계의 무력감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미교수님의 발표에서 경찰 역시 현 시점에서 가정폭력 사건을 대응할 때 피해자자 소극적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지목하였는데 앞으로 경찰의 초기대응 공권력이 강화된다고 해도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는 쉽게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경찰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의 공적 도움요청 시도는 의미없고 일회적인 행동으로 끝나게 되며 재신고가 없는 한 개입의 여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고 더구나 이 도움요청의 무산이 재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이 단계에서부터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력체계로서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안으로는 가정폭력 신고가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폭력상담소나 사회복지시스템에 사례관리의 형태로 등록이 되어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면담 및 모니

36) 여성가족부. 2010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2부 737쪽.

터링을 시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있다면 폭력의 재발이나 피해자의 욕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필요한 자원 연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의 경찰 신고에도 피해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정폭력 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에 대한 토론문

유 향 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http://www.kdcn.or.k)는 '전국적으로 150여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협의체로서, '가정폭력 예방과 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며 가정폭력상담소 간의 정보교환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가정폭력상담소들은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으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수하며, '가정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다.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들은, 현장에서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지원의 일환으로서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을 감당해 온 기관'으로서, '가정폭력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전문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강서구 전처살인사건'을 포함하여, 2019년에도 보도된 수많은 흉악한 사건의 기저에 가정폭력이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가정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해 더 깊은 고찰을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

에 마음이 더욱 무거워짐을 느낀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발생한 가정폭력사건들에 대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의 입장표명 들을 소개하며, '가정폭력피해자의 욕구와 치유, 법제 개선'을 위한 두 분의 주제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에서 두 가지의 토론의견을 표하기로 한다.

1. '보도된 가정폭력사건들에 대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의 입장표명' 소개

1) '강서구 전처살인사건에 대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의 인터뷰' 내용

(1) 가정폭력사건처리에 있어서는 '피해자의사존중'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2)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범 체포우선주의를 명문규정화 해야 한다.
(3) 보호처분 위반 시 '과태료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징역'등의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4) 가정폭력사건은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를 원한다. 즉, 강력범죄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함이 마땅하나, 보호처분 특히 상담명령과 같은 8호 처분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가해자의 성행 및 인식을 교정하는 것이 진정한 피해자지원의 일환임을 알아야만 한다.
(5)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전 국가적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및 신고, 그리고 전국에 위치한 가정폭력상담소나 피해자보호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2) '현장출동 경찰관 폭행 및 업무방해관련'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입장문 (2019.4.10. 보도자료) 내용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유향순)에서는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종한)가 지난 26일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마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는 판결문에 따르면 2017년 12월 신모 경위 등 경찰관 2명

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경찰관들이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신 경위 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마씨가 "당신들 누구냐"고 물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집 안에 문제가 없느냐"고 하자 마씨는 "누구냐"고 거듭 묻다가 주방에 있던 유리병을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 주먹으로 신 경위 얼굴을 때렸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들어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현행범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한해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9조4항**(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가정 폭력 신고로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가정집에 들어가 신분을 밝히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의무"**이고 "법원이 경찰관 공무집행의 적법성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라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판결이 잘 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 경찰관이 "오원춘사건 이후 경찰 지휘부에서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의심스러운 장소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이게 다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112 신고 된 집이 조용하면 그냥 돌아오라는 건데, 그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누구 책임이냐"라고 한 경찰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황당한 판결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더 큰 사건이 되었다면 법원이 책임을 질 것인지,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만 요구하며 경찰관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보다 심각한 범죄가 발생해도 경찰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로 오해할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2018년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대응 매뉴얼 제작 관련 정책제안 중 첫 번째로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정확히 가지고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했으며 경찰청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단 간담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효과성 있는 역할을 기대하고 책임성을 부여 한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제2의 강서구 사건’을 막겠다며 지난해 11월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도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이 주요 골자 들어있어 가정폭력방지를 위해 경찰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경찰초동업무를 경시하는 판결태도를 수정할 것이며, **정부는** 경찰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책임만 강요하는 안타까운 사태로 인하여 낮아진 경찰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가정폭력현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3)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성명서 (2019.6.5. 보도자료) 내용

: 지난 5월 15일 전 김포시의회 모의장이 부인을 골프채로 때려죽인 참담한 사건이 전해짐에 따른 당혹감이 가시기도 전에 5월 28일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20대 여성이 이송됐던 병원 옆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5월 28일 오후 4시 13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8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29살 A씨가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가 추락한 건물 옥상에서는 그의 신발과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자필유서가 발견 됐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6시간여 전인 오전 10시 32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남편 29살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에 요청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옆에 있는 상가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가정폭력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의 남편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가정폭력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여자분은 맞았다고 하고 남편은 때린 적이 없다고 해서….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안일한 대응과 무심한 태도는 피해자들이 무방비로 살인위험에 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가정해체와 사회와 국가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연수구 사건은 그동안 계속해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접하면서 공포심에 떨어 자기도 잘못하면 남편에게 맞아 죽겠다는 두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대 여성피해자를 직접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극심한 후회가 남습니다.

이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일련의 ‘가정폭력에 의한 아내의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가해자(남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때리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는 악질적인 자세를 규탄한다.
2.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직시하여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의 범행일체를 밝혀야 한다.
3.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해법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주위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시선, 신고의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자.
4.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충분한 안정과 자활을 위한 시설지원과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에 의한 강력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5. 가정폭력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더 노력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전가를 하지 말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해자들의 변명을 받아들이는 판결은 당장 사라져야한다.
6. 가정폭력 근절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7. 가정폭력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즉시 112에 신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8. 경찰과 검찰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지역에 위치한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주제발표 '부부폭력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 에 관한 토론

: '부부폭력 피해여성들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그 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경험적 지식'을 살펴본 연구를 통해 '진정한 피해자지원이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고민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가정폭력상담의 현장에서도 '피해자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해서 가장 치중하는 부분이 '관계패턴의 변화' 즉, '대처방식의 변화'를 꽤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은 가정폭력상담소들이 수행해 온 피해자지원업무가 적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욱 더 그에 대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지속 제공해야할 것임을 다짐하게 됨.

3. 주제발표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토론

: '가정폭력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란 논쟁이 있을 때마다, 가정보호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슴을 졸여야했던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로서, 본 주제발표자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책의 방향'의견 개진을 보면서 가슴이 뻥 뚤리는 것 같은 신선한 느낌을 갖게 됨,

: '때린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매우 공감하고, 피해자 안전과 자립

등을 위한 국가적인 충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봄.

: 경찰의 초기대응 시, ‘경찰에게 명령권을 수행하게 하는 권한 부여’ 등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짐.

: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에 관한 특례법으로 설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거야!!’라는 찬사를 보내야할 정도로 매우 훌륭한 제언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토론문

이 민 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 들어가며

가정보호재판을 담당하면서 실무상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을 통해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너무 반가왔습니다.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장희숙 교수님과 정현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에 대한 토론문

부부 사이의 상반된 삶의 태도와 행동양식으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고, 그 전후 상황에서 가해자의 [자극 불허의 삶]과 [결혼 의미 상실]의 피해자 모습이 나타나며 폭력대처 변화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상담소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것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제가 발표자께 묻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무상 부부폭력 사건을 담당하면서 부부 사이의 폭력이 단순히 당사자 사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인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폭력에 노출된 자녀들 중 일부는 자신이 가해자가 되어 폭력 등 범죄에 나아가게 되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즉 부부 사이의 폭력이 아동학대 같은 범죄로 확산되고, 다시 소년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의 폭력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함에 있어 발표자께서 평소 생각하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대한 토론문

가정보호사건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서 발표 내용을 통해 현재 가정폭력처벌 등 특례법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서 발표자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가정폭력처벌 등 특례법에 규정된 임시조치가 범죄수사를 위한 처분이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재발방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인 검사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아가 가정폭력사건을 경찰과 법원이 아닌 검사가 주도하는 현행 법체계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실무상 가정폭력사건이 다른 범죄사건과 같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정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임과 동시에 범죄행위로서 그 행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되고, 검사는 수사권자로서 가정폭력범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 둘을 분리하여 보호처분의 경우는 검사의 관여 없이 경찰이 행정작용으로서 법원에 직접 청구하고, 형사처벌은 보호처분과 별개로 검사의 관여 아래 형사재판을 통해 내리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현행법 체계와 달리 폭력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호처분을 형벌에 대한 특례로 규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재판에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지 선택 여부를 검사에게 부여한 현행법 체계와 달리 경찰에게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검찰의 관여 없이 직접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고, 법원이 이를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권을 주는 방안은 그 나름대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자인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마치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가정폭력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발표 ❹ |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에 대한 토론문

김 현 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 우선 “가정폭력 피해자 대응방식변화와 법제개선”을 주제로 의미있는 심포지움을 열어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가정폭력처벌법 법제개선 및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에 관해 발제를 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제와 논의가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정책과 법제개선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발제자께서 제시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의견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에 앞서, 우선 지난해 10월 22일 강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으로 마련한 가정폭력방지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가정폭력처벌법 법제 개선과 최근 발의된 가정폭력처벌법 의원입법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 당시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할 ▲가정폭력 피

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 수립하였다.

○ 가정폭력방지대책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영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하도록 했고,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특정사람'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했다.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에 ▲퇴거 등 격리, ▲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이외에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기로 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또한,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입건 및 사건처리로 현장 초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 개발(조사항목, 후속 조치기준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 가정폭력 신고이력은 112시스템과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 관리하여 향후 상습성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종결을 최소화하고, 가

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폭력 범죄 종류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범죄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호처분 대상자를 상대로만 가능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제도를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배제하는 지침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가해자의 성행교정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유형에 '상담소 등에의 상담' 신설하기로 했고,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 현재 법무부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따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금명간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초등대응-수사-사후관리 단계별로 가정폭력 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가정폭력 단계별 대응모델'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중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운영(3개 시·도, 서울, 대전, 전남),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강화 연구용역, 가정폭력예방 콘텐츠(1종) 개발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신설 등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 현재 26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정부의 가정폭력방지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8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의원입법으로 발

의되었다. 이것은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 가해자 처벌 및 성행교정,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과 사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반증한다.

○ 지난해 가정폭력방지대책에서 제시한 개선과제 중에는, 정현미 교수님께서 “가정폭력의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제개선” 발제에서 논의하신 것처럼,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되어 있지만,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관이 가해자를 사건현장 및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미있는 제도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또는 해석도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장희숙 교수님, 황순찬 교수님께서 “부부폭력 피해여성의 폭력대처 변화과정과 경험적 지식” 발제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부부폭력 피해자 10명이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대처한 방식과 대처방식의 변화과정, 이 과정에서 습득한 피해자의 경험적 지식에 관한 질적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정책 모색과 관련사업 추진, 그리고 가해자 성행교정, 처벌 등 방지정책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상담, 보호 및 지원서비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법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자,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 효과성 등 가정폭력예방 및 방지, 피해자 지원사업의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중단기적인 시계열하에서 민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가정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민의 높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라는 대의로 정부, 국회, 사법부, 검·경수사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과 학계전문가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한국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가정폭력예방 및 방지, 피해자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